

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1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2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46)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97)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7)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9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3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6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66)

번호 2201274)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7)
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0)
1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2)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2)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5)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5)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8)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8)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4)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2)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0)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4)
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6)
29.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3)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0)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5)
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0)
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3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6)
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5)
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3)
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1)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1)
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5)
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2)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7)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0)

-
- 4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 4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4)
 - 50.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0)
 - 5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6)
 - 5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4)
 -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4)
 -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5)
 -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1)
 -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2)
 -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6)
 -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5)
 -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1)
 - 6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1)
 - 6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1)
 - 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8)
 - 6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4)
 - 6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2)
 -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1)
 -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6)
 -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1)
 -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6)
 - 7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7)
 - 7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4)
 - 7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2)
 - 74.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 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5)
 - 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3)
 - 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9)
 - 7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5)

-
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3)
 8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2)
 8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6)
 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7)
 8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7)
 8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6)
 8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3)
 8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4)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6)
 8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9)
 90.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9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8)
 9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8)
 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8)
 9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2)
 9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8)
 9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8)
 9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4)
 9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9)
 9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7)
 10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10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1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4)
 1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9)
 10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0)
 10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2)
 10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9)

1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0)
1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2)
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7)
1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2)
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4)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5)
11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8)
11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11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1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1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1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11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5)
1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12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8)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6)
1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0)
1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9)
1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5)
1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3)
1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0)
1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3)
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9)
13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13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132.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0)

-
- 13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 13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8)
 - 1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9)
 - 13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0)
 - 1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5)
 - 1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4)
 - 13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4)
 - 1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0)
 - 14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5)
 - 1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3)
 - 1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4)
 - 14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1)
 - 1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3)
 - 1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6)
 - 14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148.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1)
 - 149.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 15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9)
 - 15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 1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7)
 - 1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3)
 - 1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
 - 1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 15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
1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1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6)
16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5)
1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1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9)
16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5)
16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8)
16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3)
16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8)
167.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3)
168.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6)
169.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170.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9)
1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6)
17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7)
1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6)
174.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57)
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9)
1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6)
17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
17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6)
17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1)
1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4)
1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7)
1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2)
1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3)
1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3)
1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18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6)
18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
18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189.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3)

-
- 190.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8)
 - 191.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 192.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29)
 - 1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1)
 - 1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8)
 - 19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 19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334)
 - 19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4)
 - 19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0)
 - 19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5)
 - 20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1)
 - 20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9)
 - 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7)
 - 2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 2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3)
 - 205.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및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 관련 보고
-

상정된 안건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3) 16
-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25) 16
-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46) 16
-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0) 16
-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97) 16
-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5) 16
-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7) 16
-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94) 16
-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33) 16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11.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0)	16
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6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8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94)	28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65)	28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4)	28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7)	28
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0)	28
1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2)	28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2)	28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5)	28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5)	28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8)	28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8)	28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4)	28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2)	28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0)	28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4)	28
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6)	28
29.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3)	29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0)	29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5)	29
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0)	29
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29
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29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29
3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29
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6)	29
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5)	29
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29

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29
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3)	29
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1)	29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1)	29
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5)	29
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2)	29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7)	29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0)	29
4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29
4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4)	29
50.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0)	29
5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6)	29
5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4)	29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4)	29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5)	29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1)	29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2)	29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6)	29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5)	29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29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29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1)	29
6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1)	30
6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1)	30
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8)	30
6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4)	30
6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2)	30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1)	30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6)	30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1)	30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6)	30
7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7)	30
7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4)	30
7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2)	30
74.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30
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5) ...	30
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3) ...	30
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9) ...	30
7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5) ...	30
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3)	30
8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2)	30
8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30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6)	30
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7)	30
8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7)	30
8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6)	30
8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3)	30
8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4)	30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6)	31
8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9)	31
90.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	31
9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8) ...	31
9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8)	31
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8)	31
9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2)	31
9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8)	31

9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8)	31
9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4)	31
9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9)	31
9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7)	31
10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31
10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31
1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4)	31
1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9)	31
10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0)	31
10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2)	31
10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9)	31
1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0)	31
1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2)	31
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7)	31
1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2)	31
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4)	31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5)	31
11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8)	31
11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31
11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31
1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31
1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31
1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31
11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5)	31
1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	32
12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8)	32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6)	32
1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0)	32
1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9)	32
1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5)	32
1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3)	32
1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0)	32
1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3)	32
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9)	32
13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32
13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32
132.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0)	32
13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32
13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08)	32
1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9)	32
13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50)	32
1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15)	32
1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4)	32
13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4)	32
1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0)	32
14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5)	32
1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3)	32
1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4)	33
14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1)	33
1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3)	33
1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6)	33
14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33
148.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1)	33
149.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33
15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9)	33
15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33
1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7)	33
1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3)	33
1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33)	33
1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33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33
15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33
1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8)	33
1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6)	33
16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5)	33
1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33
1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9)	33
16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5)	33
16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8)	33
16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3)	33
16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8)	33
167.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3)	33
168.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6)	34
169.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	34
170.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9) ..	34
1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6) ..	34
17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7) ..	34
1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6) ..	34
174.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57)	34
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9) ..	34
1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6) ..	34
17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	34
17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6)	34
17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1) ..	34

1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4)	34
1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7)	34
1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2)	34
1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3)	34
1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3)	34
1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	34
18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6)	34
18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	34
18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34
189.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3) ..	34
190.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8) ..	34
191.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	34
192.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29)	34
1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1)	34
1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8)	34
19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34
19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334)	34
19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4)	34
19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0)	34
19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5)	35
20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1)	35
20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9)	35
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7)	35
2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35
2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3) ..	35
205.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및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 관련 보고 ..	52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 후에는 최근 8월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33)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0시05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2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8일과 8월 1일 그리고 8월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김성원 의원, 염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복기왕
의원, 윤종오 의원, 이연희 의원, 황정아 의원, 황운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이중 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의 특례를 부여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전세 관련 대출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토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1일 및 19일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건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택시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의 전국 확대 실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서로 노사 합의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던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을 고려하고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현재 주 40시간 월급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진 소위원장님과 문진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오늘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도 하겠다는 게 이 법의 내용인데 솔직히 LH가 몇 건이나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 큽니다. 이런 의문점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했을 때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당 위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만큼 실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앞으로 해 나갈 주체의 측면에서 국토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 전체를 LH에 떠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LH는 지금부터 몇천·몇만 건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매칭해 줘야 되고요. 이런 일에만 아마 수백 명이 몇 년간 전업으로 달라붙어야 원활하게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H에게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지 않으면 법만 만들어지고 실제 구제는 거북이 걸음처럼 할흥차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LH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LH 인력이 대폭 감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손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전담인력 증원과 같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해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삶을 발목 잡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낙찰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를 감면받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인 피해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될 텐데 전세사기 당한 원룸에 10년 동안 공짜 거주하는 것 말고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10년간 그 피해 상황에 그대로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지원책이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개개인의 사정과 삶의 변화까지도 배려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생긴 피해자들에게는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을 상향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위원회 단계에서 또 LH의 집행 과정에서 또 국토부의 고민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의견……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당면한 큰 문제들이 한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첫째는 토지 보상, 어업 보상, 생계 대책, 이주 대책 등과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즉 주민들의 동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난공사인 이 공사의 부지조성 공사 시공 주체가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머리를 맞대고 잘 풀어 주신 덕분에 토지 보상과 관련한 법은 오늘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주 대책, 생계 대책, 어민 보상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수용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공사 지연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용역 중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현지인들에 대한 이주 대책, 생계 대책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는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말씀 안 듣도록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이더라도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주체적으로 국토부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주 대책, 생계 대책은 피드백도 열심히 하시면서 용역을 잘 마쳐 주셔야 할 것 같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엄청난 지연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그리고 현재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지금 3차까지 유찰이 되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4차 재공고 어제 막 들어갔습니다.

○김도읍 위원 어제 4차 재공고가 들어갔고 시한은 9월 5일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4차 재입찰 공고도 경쟁입찰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선정 문제로 벌써 예정된 기간보다도 한 4개월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가 경쟁입찰만,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이게 하세월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4차 입찰까지 안 되면, 제가 볼 때 국토교통부가 사실 경쟁입찰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정말 할 만큼 다했다. 이제는 공익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맹성규**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김도읍 위원님 질문부터 바로 역순으로 답변을 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덕도신공항은 큰 공사입니다. 공사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게 크고요. 또 동남권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3차까지 단독입찰이 되어서 4차 재공고를 하고 건설업계에다가 다각도로 추가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다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어쨌든 9월 5일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경쟁입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기가 29년 개항이 저희들이 내걸은 목표이고 그것은 부산 김해공항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 하루라도 빨리 개항을 해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29년 개항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업체를 빨리 선정하고 공사를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SOC 공사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가지고 보상에 임해 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히 쟁여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조금 지나서 진행 상황은 따로 한 번 더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 지적하신 전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옳으신 지적이시고, 사실 법안이 됐다는 것은 보상과 그분들 피해 보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법안이 본회의 통과하는 자체가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이소영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국토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장관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합당하게 이행하시겠

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국토법안심사소위 전후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수백에서 수천 건의 문자폭탄같이 많은 우려 사항들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기대하는 게 크다 하는 건데 그중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되지 않았던 많은 사안들이 또 우려되는 사안들로 절박한 호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 이후에 이 건이 시행되게 될 때 시행규칙이든지 지침을 만들고 세부 사안들을 다듬을 때 지금까지 약속하셨듯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담을 수 있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담고 그 기준과 지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국토위 위원님들께 전체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지침과 시행기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보상되고 있는지도 보고를 중간중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해 유형들이 지금도 새롭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해 가면서, 아마 장관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실국장 선에서는 피해자의 새로운 유형과 또 사례들을 끊임없이 접수하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련되는 단체나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만나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정취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급적용이 법에는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많은 이견들이 생기고 거기에 절박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급적용의 기준과 내용들을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피해자들의 유형 속에는 이미 상당 부분 피해를 안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소급 시점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더 이상 호소할 데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예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아까 이소영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지만 이 법 개정이 되면 사실 이게 하나의 틀이 돼 가지고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텐데, 아마 제 경험이나 제 짐작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여러 번 개정을 해야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이 발생한다든지 또 우리가 오늘 통과시킨 법안으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신속하게 또 개정을 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기본단위가 오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안을 만들 때도 같이 소통하고 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말씀드리고 또 피드백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주요한 장르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집값 문제, 투기 문제 이런 데를 주로 고민했는데 지금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현실적인 주택정책의 어젠다가 돼 버려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지혜도 구하고 또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되어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김도읍 위원님 질의에 국토부장관님이 답변하는 중에 여러 번 유찰됐지만 29년 개항에 대한 의지는 굳세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또한 함께 지켜지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만약에 시공사가 어떤 형태든지 선정이 되면 그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장관님의 의지 감사합니다만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의 실무적인 의견을 들어 본 바로는 기본설계에 6개월이 걸리고 기본설계 심의에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7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도 24년 착공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어서 장관님의 의지와 실무진 간의 이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건설자동화설비 도입이라든지 최신 공법 적용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시작한 다음의 기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4년에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과 장관님과의 의지를 합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선정된 업체와 실무진들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들이 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봐서 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프로세스 계획을 재정립하고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24년 내 착공, 29년 개항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는 지금 다시 4차 공고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는 것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자 선정 유찰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단독 입찰 시에도 사업자를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이 ‘전세사기피해자였다면’이라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권리가 구제돼야 되고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와 논의 과정에 피해자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임대주택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규모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실행 준비가 돼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의 있게 정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은 기준에 가지고 있던 주거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논의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받은 돈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주거 수준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10년의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10년 추가 임대주택 거주권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안을 제시했고, 그 프레임에서 계속 가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결혼이나 출산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맞춰서는 기본적으로 생활지원의 측면에서 충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액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치에 합당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 논의 과정에 있었던 진 차관님은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 부분은 제가 소위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가구원 수 증가라든지 주거 상향 수요를 감안해서 이번 법안에서도 대체 공공임대, 민간의 전세임대 포함해서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 공공임대도 있고 또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계속 계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이상’이라면 임대보증금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규모와 다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큰소리로 해 주셔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윤종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맹성규 윤종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종오 위원 법률안 지금 뚜드라면 바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맹성규 그렇지요.

○윤종오 위원 제 개인 의견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1번……

○위원장 맹성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종오 위원 가덕도신공항 관련한 것.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가덕도신공항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우리 당론으로 결정됐고 그래서 이 법안도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의견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 인정 범위의 사각지대 발생과 실효성 낮은 기준 지원 방안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 과정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주신 권영진 간사님, 문진석 간사님을 비롯한 국토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아픔이 하루라도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각종 대책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사기 사후 대책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 또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정안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 후에 국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윤종오 위원 이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위원장 맹성규 윤종오 위원님 이의 있으신 것은 정리하였습니다.

○윤종오 위원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정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수고해 주신 양당 간사님, 한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많이 내셨습니다. 21대 때부터 우리가 민생의 문제를 합의해서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악순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 야당의 문진석 간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회의보다도 간사 간에 물밑에서 여러 번의, 사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위에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가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에게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헌법 제35조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그리고 헌법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이 법안이 성안되고 논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전세 피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 위원들께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매차익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굉장히 우려하셨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그동안 정부 여당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 한 사람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들 명도소송과 강제 퇴거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대한 강제 규정을 넣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데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법무부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탁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신탁회사들 스스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매에 대해서 경매가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대한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경매 관리에도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피해주택에 대해서 지자체에 관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게 관리 의무를 법이 부여했다고 해서 국토부가 뒷짐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의 문제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 법이 정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이 법의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 대해서도 박상우 장관님 비롯해서 차관님 그리고 수고해 주신 지원단장님, 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문진석 간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뜻깊은 날입니다.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는데요. 특히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정말 제가 끊임없이 요구함에도 그 요구를 다 수용하고 또 정부를 설득하고 여당을 설득해 주신 권영진 간사님의 수고가 누구의 수고보다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야당을 위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

한테 엄청 큰 선물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국회가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 또 여야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각보다는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리셔서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큰 합의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께서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더는 피해자들을 희망도 없는 어둠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소중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처럼 여야가 협치에 기반해 개정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토교통위 민주당 위원 모두가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피해자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도 당부드립니다. 아직 본회의 의결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금부터 피해 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권영진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과 다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가지 법률 전부 다 사실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서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시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국회와 상의드리 는 걸로 그렇게 단서가 달려 있고요. 또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과제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45분)

○위원장 맹성규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40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94)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65)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4)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7)

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0)

1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2)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2)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5)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5)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8)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8)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4)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2)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0)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4)

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6)

-
29.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3)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0)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5)
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0)
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3)
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3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6)
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5)
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3)
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1)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1)
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5)
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2)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7)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0)
4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4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4)
50.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0)
5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6)
5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4)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4)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5)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1)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2)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6)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5)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1)

-
- 6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1)
 - 6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1)
 - 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8)
 - 6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54)
 - 6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2)
 -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1)
 -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6)
 -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1)
 -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6)
 - 7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7)
 - 7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4)
 - 7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2)
 - 74.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 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5)
 - 7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3)
 - 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9)
 - 7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5)
 - 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3)
 - 8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2)
 - 8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6)
 - 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7)
 - 8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7)
 - 8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6)
 - 8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3)
 - 8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74)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026)
8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9)
90.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9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8)
92.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08)
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8)
9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52)
9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8)
9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8)
9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4)
9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9)
9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7)
10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10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1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4)
1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9)
10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0)
10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2)
10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9)
1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0)
1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2)
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7)
1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2)
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4)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5)
11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8)
11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11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1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1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1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11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5)

1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12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8)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6)
1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0)
1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9)
1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5)
1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3)
1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0)
1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3)
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9)
13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13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13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0)
13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13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8)
1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9)
13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0)
1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5)
1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4)
13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4)
14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0)
14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5)
1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3)

-
- 1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4)
 - 14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1)
 - 1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3)
 - 1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6)
 - 14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 148.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1)
 - 149.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 15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49)
 - 15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 1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7)
 - 1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3)
 - 1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
 - 1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 15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 1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78)
 - 1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6)
 - 16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5)
 - 1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 1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9)
 - 16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5)
 - 16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8)
 - 16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3)
 - 16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8)
 - 167.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3)

168.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6)
169.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170.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9)
1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6)
17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7)
1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6)
174.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57)
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9)
1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6)
17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
17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6)
17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1)
1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4)
18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7)
18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2)
1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3)
1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3)
1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18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6)
18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
18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189.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3)
190.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8)
191.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192.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29)
1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1)
1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8)
19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19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34)
19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4)
19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0)

19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5)
20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1)
20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9)
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7)
2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2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3)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4항까지 총 19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역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의 이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며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도가 저희 청주의 이름에서 명명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 청주 상당구는 1500년 청주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촌이 소멸돼 나가면서 공가 또한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주시 상당구뿐만이 아닙니다.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 건축물의 수와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해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빈 건축물의 방치 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96항 및 제11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의원**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의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그리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와 그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현행법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에 제정됐으나 두 가지 법의 목적을 모두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실행 실태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후에 2014년까지 8년간 재건축부담금은 5개 단지에만 부과됐고 부과 금액도 25억 49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억 3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 바도 있습니다. 한편 2018년 부과 면제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는 이 법이 이미 현실에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법안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둠으로써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시행돼서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됐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까지 이 제도 시행 사실을 모르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법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일부는 달성했으나 아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속 전에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집을 산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합니다. 이분들은 대출과 세입자 확보가 힘들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의원은 완공된 위반건축물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3년 동안 문제를 치유해 국민들의 역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설명드린 세 가지 법률안은 법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헌법이나 민법 등 기본법이 아니고 언제나 법 내용이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행정법이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그 내용도 상응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법리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안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의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선후배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광주시을 지역구의 안태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 배경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최상위 규제법으로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상정하며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3개 권역, 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인구의 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개발에 대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은 수도권 규제의 유형으로 크게 권역별 차등 행위 제한, 과밀부담금 그리고 총량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상 3개 권역 가운데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일부 지역은 현행법의 규제와 더불어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적용받아 소위 규제집중벨트로 이·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 형태의 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지역 정주여건의 악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경기 광주시 지역은 팔당호특별대책구역 1권역으로 전체 면적의 98%가 이 대상 지역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 가속화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제4조의 제1항에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완화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수도권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존경하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갑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시간에 제안설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저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모두의 공통분모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종에서의 실질적 집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못 박았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이자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통령선거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대통령실과 국회뿐 아니라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감사원도 모두 옮기자고 호응합니다.

우리 국회 국토위 소속의 존경하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사회민주당은 당 강령에 대통령실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하였습니다.

국회,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같은 마음입니다. 아마 여야 모두가 이렇게 한목소리로 입장이 같은 사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소중한 국정과제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완성됩니다. 대통령이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정수도의 의미는 퇴색합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7년 5월에 취임할 다음 대통령은 새로운 세종 집무실에서 국정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 것입니다.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이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17일 본 의원이 동료 의원 21명과 함께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 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인지 여부를 몰라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편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면적을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본 특별조치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배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의원**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항들은 주요 거점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껏 공항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단순히 운송 거점 수단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항은 단순한 항공교통 이용시설을 넘어 주변 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공항의 잠재력을 꽂아 활력을 넣은 국내 공항들의 활성화와 연관산업 생태계로의 확장·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개발의 마중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공항경제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인허가 의제 및 세제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을 거점으로 한 특색 있는 개발을 통해 지방공항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서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의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은 물론 교통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교두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제안드립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역 격차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교통약자 이동에 대한 물리적·사회적 차별이 심각합니다. 더 이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편의 제공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명확하게 시민권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갖고 있는 선택적인 서비스에 불과한

맹점을 보완하고 포괄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인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항공 해운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그 어떤 교통수단에서 제한되거나 분리 배제되지 않도록 보편적인 이동권을 법률에서 보장하여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휠체어를 타는 사람, 유아차를 밀어야 되는 사람,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의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 기반한 정부의 광역교통 2030 사업계획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70조 원 지방 대도시 30조 원 등 총 100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전북 지역만은 100조 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로 익산 군산 등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대도시권 정의에서 제외되다 보니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은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다 보니 교통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를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어려움을 살펴봐 주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문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의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충남 서산에서 천안을 거쳐 울진까지 총 330km를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님이 발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부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과거 대선, 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으로 반영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지사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몇 년째 무의미한 기다림만 계속되고 공약이 지켜지지 않음에 시민들의 분노도 쌓여 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제대로 된 국회 논의조차 없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은 국회가 나서 중부권 시민들의 숙원을 이뤄내 주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해 임호선, 임종득 의원님께서도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도 여야 공통 공약입니다.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대계입니다. 여야가 협치로 통과시켜야 할 균형발전 1호 법안이 되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2대 국회 여야 협치의 상징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38항, 49항, 59항, 79항, 86항, 93항, 113항, 119항, 122항, 132항, 141항, 162항, 171항, 186항, 195항, 197항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안 2건과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과태료 등으로 완화하여民間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로법, 물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담금을 선별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안 2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 2건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설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 청년, 신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29항까지 총 1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11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강선우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김남근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김재섭 의원안은 다음 달 9월 20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한정애 의원안, 김우영 의원안, 한민수 의원안, 김재섭 의원안은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물보상 기준일의 조정, 주민 권리 보호 등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 및 제도개선은 사업의 효과와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황정아 의원안은 확정

일자부의 기재사항 중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또는 임대인이 해당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것이며, 정준호 의원안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근거자료로서 신탁원부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권영세 의원안은 조합원이 협행법에 따른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의사결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김상훈 의원안은 임대의무기간 15년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신설하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아파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복원하고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신설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최소 등록 기준을 현행 1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필요성과 아울러 현재 비아파트와 아파트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뒤로 쭉 넘어가서, 31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김은혜 의원, 김도읍 의원, 이정현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려는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 보호 등 개정안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법률을 준수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위반건축물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부터 제204항까지 총 7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7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여건, 공익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권영세 의원안은 이륜자동차 등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공익신고 관련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안은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법의 교통정책들을 통합 조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교통 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윤덕 의원안과 이춘석·권성동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은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점에서 긍정적인바 타 지역 간 형평성 측면, 향후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로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제출안은 도로관리청이 타공사·타행위로 인한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원인자에게 사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91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부담금 정비 취지를 살리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제91조를 삭제하기보다 수정하는 쪽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남권 교통·물류 성장 촉진, 가덕도신공항과 연계 확보 등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적 성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사업 방식으로 토지의 수용·사용 방식만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지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증가하는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호선 의원, 문진석 의원,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고도화, 경제권역으로서 중부권의 성장 촉진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정점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점식 위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51항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님과 함께 대표발의를 했고 여야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수도권 중심의 과밀경제의 한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률 저하와 저출생 그리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점식 위원** 특히 현재 남해안은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보석 같은 섬들로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으로 해서 관광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적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해서 남해안 관광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점식 위원**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해안 쪽을 제2의 경제권으로 구축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데 있고 그리고 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해서 남해안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저성장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보고는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정책 어젠다입니다. 각 지역이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특히 남해안 지역이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일부에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법안은 사실상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 특별법하고 똑같은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해안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남해안을 제2의 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우선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장관님하고 대광위원장님께 김윤덕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 관련된 것,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이 법률상으로는 사실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지금 이 안에 특별시나 광역시만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전주라든지 전북권에 광역도시가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라든지 교통 측면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측면인데 이 부분들은 예외 사안을 뒤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이 위원회도 있고 또 관련되는 예산편성도 이루어지고 해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한번 보니까 굉장히 효과성이 있는 조직이고 수단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대상 지역을 전주까지 넓혀 달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문제 가 수반되기 때문에……

○**한준호 위원** 어느 정도나 예산이 더 추가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준호 위원** 대광위원장님, 추계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저희가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2025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 이후까지 했을 때 22.7조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전주권만 봤을 때는 한 1.7조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는……

○**한준호 위원** 이게 한 해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연 단위로 봤었을 때는, 총사업비가 1.7조 정도 추가된다라는 거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그것은 저희가 마련했다기보다는 전주권에서 희망하는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 범위 예산으로 좁히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대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저희들도 균형발전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재정적인 소요도 있겠지만 다른 도시에도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광위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준호 위원** 이게 어쨌든 현재 행정권역에서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예.

○**한준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에서는 효율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제외하고도 실제 50만 이상의 도시라든지 이런 일정 특별한 범위를 좀 뒤서 특별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정점식 위원님 질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국토교통부의 제일 첫 번째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고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전라북도 빠져 가지고 이춘석 위원님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전북도 광역적인 익산 또 요즘 새만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광역적인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이 법은 아시겠지만 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 범위를 제한을 들 수밖에 없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이 법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면 대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대안이 뭐냐 하면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전주권 같은 데는 당연히 인접 지역하고의 광역교통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필요성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일 이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 등의 반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입장에서 어프로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80항과 81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지만 이 새만금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주민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거꾸로 새만금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새만금개발청장도 있고 공사 사장님도 있고 두 분 계시는데, 만일 새만금이 전라북도가 아니고 영남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었으면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새만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1년 전입니다. 이 새만금 SOC사업 예산, 그때 챔버리 사태의 책임론 대두되면서 그 돈 다 갖다 애먼 데 썼다라고 여당도 주장하고 정부도 동치해서 사업을 다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6620억 원 대비 78% 삭감된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업 예산 다 중단시키고 적정성 검토 다 다시 해라 해서, 그런 적 있지요?

그런데 그 조사를 다시 했는데, 만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사전타당성조사라든가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 적정성 검토가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다시 용역해 봐라 하는 전례가 이 새만금 말고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춘석 위원**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부분 다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8개월 동안 중단됐는데 용역을 다시 해 보니까 다 적합하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중단 잘못 시킨 거지요.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이게 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죽 보니까 21대 국토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원희룡 장관께서. ‘저희가 그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들은 그동안 지체된 시간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새만금사업 8개월 중단됐고 당시 국토부장관은 재검토 후에 문제가 없다면 지체된 시간까지를 보상해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국회에 출석해서 호언장담했어요.

이 보상 누가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재검토 용역 결과 몇 가지 개선 과제들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 개선 과제들에 따라서 우선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미세한 조정은 있습니다, 있고.

제일 중요한 사업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춘석 위원** 내가 신공항사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물어봅시다, 국정감사에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누군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35년간이나 진행되던 사업을 말 한마디로 8개월 중단시켜 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다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국토부장관이 최소한 전라북도 도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달리 나왔다고 하면 제가 그 얘기 안 물어봐요. 그런데 적정하다며? 아무 문제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8개월 동안 그냥 정지시켜 놓고 예산 다 깎아 버렸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의원들 다 삭발하고 단식 농성하고 그랬어요. 이거 누군가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당시는 아마 그렇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 다 적절하지만 몇 가지 보완 사항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사항들은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이춘석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전혀 책임이,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이 받은 자존심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 전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쨌든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새만금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중단시켰으니까 대통령한테 사과받아야겠네요? 아니면 총리가 이거 했으니까 총리한테 사과받아야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하는 사항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춘석 위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만금 가지고 정치인들이 툭툭툭 던져 가지고 상처받고 동네북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새만금 가지고 40년 진행된 그 사업 가지고, 가덕도는 저렇게 물밀듯이 가는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국토부장관님이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송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44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6번 주택도시기금법에 관련돼서 장관님과 1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소위에 들어 있었으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안 할 텐데 국토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돼서 장기 방치된 건물이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286개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특히 대부분이 지방도시에 다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별로 없어요. 중소도시에 다 있습니다. 공사를 짓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는 건데 대형건물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여건 특히 수익 여건 등등 때문에 중단이 되는데 이게 10년 이상 방치된 것만 해도 한 200개 가까이 되고 20년 이상 방치된 것만 해도 100개가 넘는 이런 실정입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도시에서 굉장히 큰 건물이 수십 년 동안 공사를 하다 말고 그냥 방치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흉물이 될 뿐 아니라 주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잘 나서지 않는다는 등의 일이 있는데, 선도사업으로 40개 선정했는데 그중에서도 반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나머지는 또 방치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게 이 두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명령을 내릴 뿐 아니라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두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에서 철거명령의 강제력을 두면 아마 이해관계 조정에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면 속도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기금을 지자체가 조성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전국에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장기방치 건축물이 더더욱 오래 방

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사안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애물단지일 뿐 아니라 건강과 환경, 안전에도 굉장히 큰 위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방치돼 있는 것이 단순히 관련된 권리자들의 어떤 문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차관님 법안심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점을 잘 고려하여 가지고 법안이 조금조금 더 보강이 되면서 전국에 산재돼 있는 수십 년 장기방치돼 있는 공사중단 건물이 아닌 흉물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감기가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안건 149항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가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지방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 계획을 위해서 전국에 네 군데 정도를 상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대하고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하고 국제물류단지하고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무역지대하고는 특별히,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소관 업무고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용역 결과 나왔으면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아마 전국에 골고루 네 군데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일반법적인 측면에서 이 조항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관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159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요.

대광법, 아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도로법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 인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승 체계라든지 광역도로

교통을 세워야 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체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법 개정안을 냈는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과 같이 유사한, 준해서 도로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분담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안을 냈는데요. 그 부분도 국토부에서 심층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매번 기재부가 재정 부담이 된다 해서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주권도 마찬가지듯이 이것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교통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29항까지 이상 117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30항부터 204항까지 이상 75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고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5.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및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 관련 보고

(11시47분)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05항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및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8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최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전기차 화재 사고 그리고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등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 현안 중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입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 전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6개 분야 49개 과제로 구성돼 있고 그중 18개 과제는 국회에서 8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일 3시 TV를 보고 주택 공급 대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협조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 어떻게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고 정부 정책을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30년 넘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1월 10일 대책도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국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하고 또 협의를 한 후에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저희들의 생각 또 관행,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요 정책을 만들 때는 입안 과정에서부터 개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의견도 듣고 또 이런 발표 전에는 충분히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정책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서울·수도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42만 7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을 제정하고 도시 건축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와 신규 택지 공급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공공의 신축 매입 약정을 1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울은 제한 없이 최대한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등에게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해 25년까지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신규 택지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9월 중 CR리츠를 출시하고 PF 대출 보증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의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 이외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구시는 동대구역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동대구역광장은 아직 준공 고시가 되지 않아 위탁 시행자인 대구시가 관리

하고 있는 상황이며 표지판 역시 대구시 예산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정부는 추후 준공 확인 과정에서, 준공 확인이 되면 국유재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표지판 처리 방안에 대해 대구시 철도공단 등과 협의하여 검토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를 비롯하여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 등 종합적인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한편 쿠팡 택배 종사자의 사망 사고로 택배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배 종사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내몰리지 않도록 쿠팡 측에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쿠팡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지난 주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는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운행 중에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즉시 연계버스를 투입하여 승객들을 수송하는 한편 신속한 사고 복구를 통해 다음 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하였지만 그사이 많은 국민들이 열차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최근 구로역에서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토부는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달리 자세하게 보고할 내용 있어요, 추가로?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준비된 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장관이 보고한 내용 이외에 또 추가로 할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자료에.....

○위원장 맹성규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장관이 보고한 대로 그냥 대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안에 대한 자료 요구.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복기왕 위원 겸사겸사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복기왕 위원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국회 국토위원장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기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경시가 바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연장선 속에서, 여당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쪽은 자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핑계를 대고 굉장히 늑장을 부립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특정한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주려면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산하기관의 자료를 의원실에서 받는데 언제부터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줬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 자료도 다 그렇게 협의해서 받을 겁니까? 다소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일일이 다 산하기관 자료를 통제할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국토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국토부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까지도 받아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동대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관련된 자료 중에서 일부만 왔었고, 전국 철도역광장 부속시설 내 외부 요청에 따른 조형물 등의 설치 요청 현황에 대해서 답이 안 왔습니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복기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전에 자료 검열하신 적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자료 제출은 국정감사 기준으로 하면 피감기관장들 책임하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실무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복 위원님께서 다시 짚으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번 대책 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사전에 못 한 건, 사실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그렇게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스템적으로 또 저희 관행적으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안에는 대외비도 있고 또 대안론 관계 때문에 저희가 보안 유지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어차피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단히 결례를 범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항상 요구하는 자료가 대외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혹은 비밀 문건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다 제출이 되도록, 다만 자료들 중에는 자료가 없거나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자료 제출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산하기관이 국토부하고 정책적인 조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책 조율이 아니고 자료 제출 여부라든지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이런 것은 기관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장관님이 산하기관장들하고 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세요.

○**복기왕 위원**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어떠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산하기관에 자료 요청을 합니까? 국토부에다가 바로바로 요청하면 되지요. 우리가 뭐 하러 입 아프게 산하기관에 자료 요청합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어느 부서 누가 했다 이런 말 안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사과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좀 하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기관장님들 책임하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권영진 위원** 여기 행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저도 대구시장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시장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국토부가 통제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국토부하고 산하기관하고는 서로 원 보이스로 협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에 자료 요청하는데 뭘 자료가 갔는지 장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이런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게 간접이고 통제로 비추어지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복기왕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라면 저도 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백번 이해가 됩니다. ‘어떠어떠한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자료를 줄 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검열이고 통제인 거지요. 그러려면 산하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필

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고, 그리고 만약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에 대한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저는 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권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거고. 이게 어디까지가 장관으로서 그리고 그 부서와 산하기관 간의 관계 정립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산하기관이 책임을 다 국토부로 넘기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기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산하기관하고의 협조 체계를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순서대로……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괜찮아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권영진 위원** 구로역 코레일 유지보수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고 경위와 조치에 대해서만 죽 있는데, 사람이 생명을 잃은 사고인데 유족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족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사고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 위로하고 또 보상과 관련돼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직 유족들은 사고 경위와 내용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에 다 나와서 알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그리고 실제 다치기까지의 상황,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무소식이고 심지어 철도에 달려 있는 CCTV, CCTV가 아니지요.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뜨문뜨문 영상만 있다라는 답변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유족들의 입장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만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코레일 사장님 나와 계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위원장 맹성규**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걸 보고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갑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자료 요구. 질의는 아니고요.

○**박용갑 위원** 질의 아니에요?

○**위원장 맹성규** 자료 요구.

○**박용갑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까지 할 텐데요, 오전 질의는 김희정 위원님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먼저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송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동대구역광장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아직 대구시에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준공할 때는 국토부와 잘 협의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법상 국유지에 임의로 영구 축조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최종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8 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책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99% 정도가 수도권·서울에 관련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관한 대책이 주이고요. 지방의 미분양 해소 대책도 같이……

○**송기현 위원** 있는데 그건 한 1~2%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째는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필시 수도권·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와 반대로 지방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안을 마련할 때 좀 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CR리츠가 투자한 게 지방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CR리츠는 전부 다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송기현 위원** 대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CR리츠가 투자한 게 지방에는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시나고요. CR리츠가 총 투자한 것 중에서 지방에는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앞으로 할 것 말고 과거 실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송기현 위원** 현재. 현재 하는 것 보면 한 10% 정도만 지방으로 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결국은 CR리츠로 한다고 그래도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번에 발표한 CR리츠는 지방에 한해서만 사 주는 것으로……

○**송기현 위원** 지방에 한해서만 하는데 지금까지 CR리츠가 투자하는 성향을 보면 CR리츠가 얼마나 투자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거의 90%를 수도권·서울에 했는데 그만큼 지방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CR리츠가 지방에 관심을 갖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확실하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CR리츠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방에 대해서는 CR리츠뿐만 아니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대책도 같이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사실 지방은 PF 부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PF들 살려 내는 데도, 지방은 더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쿠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쿠팡 사고가 계속 연속해서 났는데 이것이 2020년도에, 2021년도인가 사회적 대타협에서 쿠팡이 빠졌잖아요. 그런 결과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결과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방 뉴스 나온 것 보니까 CJ대한통운도 쿠팡과 가깝게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나왔어요. 지금은 쿠팡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뒤늦게 내보냈는데 쿠팡에서 발표한 대책이 대부분 사회적 대타협 내용 안에 들어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쿠팡은 좀 더 하겠다 그러는데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야간도 주 7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더 악화되는 것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쿠팡CLS가 사회적 대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아마 그때는 물류회사로 등록이 안 됐던 회사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자기들이 그에 준하는 사회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CJ 대한통운 건은 제가 오늘 방금 처음 들어 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방금 뉴스에, 조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기네도 쿠팡과 같은 형태로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것 같아요. 쿠팡이 발표한 대책이 좀 더 확실하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 또 사회적 대타협에 있었던 내용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택배 관련된 업계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는 또 보고서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특히 쿠팡의 클렌징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영업점에서 쿠팡이 제시한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영업 구역을 완전히 뺏어 버리는 클렌징 조항에 대해서, 이게 영업점에서는 택배기사들한테 조금 더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고서에는 클렌징 조항 개선 등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장관님께서 방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표준계약서를 개정을 해서 표준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기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잘 안 따라오게 되면 생활물류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강제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기현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클렌징 계약 때문에 영업점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택배기사들한테 압박한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클렌징 조항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점을 두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박상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청라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 사건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넘어서 공포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아주 만연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번 청라 사건 8시간 만에 진화됐다,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장기간 화재가 진행이 됐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동차가 한 780여 대 연기에 그을렸고 불에 탄 게 한 80대 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내부도 1000도가 넘게 되면서 각종 수도관이나 설비가 녹는 등 피해가 약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8월 11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요 2020년에 11건이던 화재 사건이 2023년, 작년이지요. 72건, 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는 다 아시겠지만 진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진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조사 중에……

○**김정재 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지요.

그런데 CCTV를 보면 분명한 것은 벤츠 EQE에 탑재된 NCM 배터리 여기에서 발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발화의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충전 중에 난 사고도 아니고 또 단순 주차가 아니라 3일 동안 거기에 계속 주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과충전으로 된 것도 아니고 외부 충격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뭘까, 지금 굉장히 원인 규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이런 원인 규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답답해하고 있지만 더 분노하는 게 이 벤츠사 개발 총괄책임자가 2022년 인터뷰할 때 벤츠사에는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사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탑재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보니까 성능이나 실적이 한참 떨어지는 10위 파라시스라는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을 한 겁니다. 이것 완전 거의 소비자 우롱하고 사기 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국토부 산하 담당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배터리 부분은, 전기차는 굉장히 여러 부처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요.

○**김정재 위원** 일단은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배터리 부분은 저희 담당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회사 것……

○**김정재 위원** 예, 이렇게 속이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CATL사 배터리인데 그게 아닌 다른 10위권 회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법보다는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김정재 위원** 앞으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율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14개 회사가 전기차를 수입·제작·판매하고 있는데요. 회사들이 다 자기 회사 배터리가 어떤 회사의 배터리를 쓰는지를 이미 지난주에 자율적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을 강제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범정부적으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또 소방청 관련 부서들이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 대책 내용에 그런 부분을 아마 포함해서 다루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합대책 준비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인이 아직 뭔지를 모릅니다.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일단 무조건 충전소와 주차장을 지상으로 한다? 이렇게 지상으로 하면 주택·아파트 설계자들이 와서 분통을 터뜨리는 게, 지하화로 이미 설계 다 끝났는데도 자체에서 반려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계해 오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이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게 광역을 비롯해서 이제 기초단체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시설은 한 20만 대가 있는데 83%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게 넓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의도공원의 15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더 없지요?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김정재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콜입니다. 배터리가 제조 불량이 돼서 리콜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년에서 24년 6월입니다. 올 6월까지 약 7만 대 정도 리콜을 했는데 이 리콜에 응하지 않고 마구 돌아다니는 차들이 지금 한 400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콜에 응하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오지도 않고 리콜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강제성을 가진 대책들이 있는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기차 문제는 우선 배터리 성능 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화재 가능성은 낮추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안이고요. 그다음은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두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 당국이라든지 관계부처와 긴밀히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콜에 응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 리콜이라는 것은 사실은 차 소유자를 위해서 리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고의든 생업이 바빠서든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강제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검사할 때 폐널티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그냥 순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던 것을, 왜냐하면 인근 차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강제를 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기검사할 때 폐널티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경기 용인시를 손명수입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동대구역 철도 부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철도 부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돼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국유인데 이게 출자돼 있잖아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다 출자돼 있지는 않고요.

○손명수 위원 철도공단 설립 이전의 역사는 철도공사의 출자로 돼 있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이전 역사 부지만 돼 있고 광장이 설치되는 그 부분은 국유로 돼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국유지고, 그러니까 국가 소유인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손명수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시행자가 누구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사업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이고요.

○**손명수 위원** 공단이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위탁 시행자는 대구시가 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광장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광장 부분에 대해서.

○**손명수 위원** 광장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문제의 광장 부분과 측면도로……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공단이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손명수 위원** 일부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한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위탁을 대구시에 줬습니다.

○**손명수 위원** 위탁의 의미가 뭐예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위탁이라 하면 사업 시행 전체, 공사 시행 전체를 관리하고 공사 시행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담보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대구시가……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발주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공단을 대신해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손명수 위원** 사업비도 공단 예산이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구시는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 관리자 역할을 위탁받은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광장에서 8월 14일 날 제막식까지 했는데 표지석 설치가 그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협약서에 보면 9조에 품질 관리와 사업·공사 관리, 설계 변경까지 대구시, 위탁 사업자의 범위로 돼 있습니다. 거기 또 다른 조항을 보면 ‘중대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 과연 설계 변경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라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라……

○**손명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맹성규** 예이……

○**손명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국토부 보고 자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대구시는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 관리자 역할을 위탁만 받은 것뿐이고 토지는 국유지고, 이게 17년 11월에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을 안 하고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준공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준공은 철도사업법에 따라서 공단이 준공을 하도록 돼 있고 준공 이후에는 시설물이 철도시설로서 관리가 되지요.

○**손명수 위원** 그렇지요. 공단이 준공을 하면 되는데, 지금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왜 준공을 안 하고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사업자인 대구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보다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사이의 갭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17년 이후 저희 공단과 한 열두 차례 회의도 했고 공단에서도 열한 차례 대구시에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면 대구시와 계속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준공 안 하실 거예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준공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시기에는 또 다른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에 의한 준공 조치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협의가 보통은 몇 개월이면 되는데 준공검사 권한 자체가, 검사를 공단에서 하시잖아요. 해서 공단에서 국토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나쁜 사례를 남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조치를 하셔야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손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준공 빨리 처리하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미루시면 안 되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역명과 역광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없습니다. 역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대구역광장 같은 경우에 지자체장이 역명을 바꾸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서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국토부의 역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자체는 그것을 바꾸고 싶으면 공단에 건의를 하고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국토

부에 요청을 해야 돼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바꿔 달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표지석을 설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 자료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칭을 정하여 부르는 게 가능하다’, 굉장히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이든 지자체가 별칭을 정해서 역명과 다른 광장의 이름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철도사업법 4조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법을 지켜야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든 국민이 법에 따라서 해야지 국가 질서가 유지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별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따라서 하겠지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 보고서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별칭을 정하여 부르는 것도 가능하며’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데요. 그냥 별칭을 부른 것이지요, 그냥 대구시 차원에서 부른 것이고. 이게 공식적으로 역명이 바뀐 그런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토부가 철도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역명을 바꾸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주변 지자체 간의 갈등도 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심의도 해 본 적이 있고 한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꾸고 싶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국토부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에서 이렇게 전혀 상의 없이 표지석을 설치했는데 국토부가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공식적으로 역명 변경이나 표지석 설치에 관한 제안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법적인 상태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권자가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지 혹은 우리 쪽에서 시정 조치를 명해야 될 만한 위법한 사항인지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은 이 정도의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현재는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든 어떻든 간에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설물에 개인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이름이 붙는 표지석이나 동상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국민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무적인 차원에서 큰 토론을 거치고 큰 논의를 거친 끝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더 진행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마무리하세요.

○**손명수 위원** 그래서 준공을 처리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치 위탁 사업자인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보고서가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아까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처리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8년째 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준공 처리가 안 돼서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위탁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듯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공단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그러면 위탁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위탁받은 범위를 매우 초과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토부가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본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위원장님으로서의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시고 다른 위원들보다도 훨씬 크게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위원장 맹성규** 어떻게 했는데요?

○**김희정 위원** 정부가 대답을 했더니 ‘에이’라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저는 당연히 제 의견으로 할 만하지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님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그런 데요?

○**김희정 위원**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의사진행과 관련되지 않고 본인의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의사 활동에 임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개인 의원석에 앉아서 질의를 하도록 국회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 위원으로서의 의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 질서 유지와 무관한 그런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 강한 액션을 하는 것은 중립적으로 의사를 정리하는 데는, 조금 저희가 보기기에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맹성규** 혹시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제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저는 제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네요, 거꾸로.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의사로서는 아니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대표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위원장 맹성규** 아니, 위원님……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의사진행발언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그것이 과연 적당합니까?

○**김희정 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서의 태도와 개인 맹성규 위원으로서의 태도를 분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맹성규** 저는 분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

○김희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오셔야지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건 위원님이 나중에 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려와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저한테, 그러면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응도 없어요?

○김희정 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지요.

○위원장 맹성규 아이고, 제가 무슨 반응을 못 합니까? 제가 반응을 한 것은, 제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건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제 순서가, 말씀대로 해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너무 어처구니없는 거지요.

○김희정 위원 국회법과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장 맹성규 질의하세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국회에 참여했던 많은 위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할 때……

○김희정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으로서의 태도와 개인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구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제가 마지막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들었으니까 말미에 제가 질의할 때 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끝난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되시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때 논의할게요.

됐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희정 위원 제 의사진행……

잠시만요, 마이크 켜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마이크 켜 드리세요.

○이소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보니 위원장님도 분명 찔리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뭘 찔려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으로서의 권한과 개인 위원으로서의 권리이……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희정 위원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희정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과하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김희정 위원 아니요, 위원으로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세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 가지고 또 여야 간에 위원장님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정회하시지요. 정회하고 다음 오후 질문은 김희정 위원부터 하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중간에서 얘기를 자제하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간에서 끊고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위원장은 가능하면 의견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는,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아들일 때 제가 과했다고 받아들이면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할 텐데, 저는 당연히 반응을 이거보다 더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거예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안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말씀이 안 되는 거고.

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이소영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소영 위원님……

○권영진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이렇게 정회를 하고요. 오후에 다시……

○이소영 위원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오후에 하시지요.

○권영진 위원 그만하시지요. 하면 또 이쪽에서 해야 돼요.

○이소영 위원 아니,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저는 1분도 못 하라는 거예요?

○김정재 위원 저희가 또 해야 돼요.

○권영진 위원 또 해야 되니까 그만해요. 빨리 정회합시다.

○이소영 위원 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이크 꺼지고도.

○김정재 위원 왜냐하면 회의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에 대한 권위도 떨어지고……

○이소영 위원 왜 여당만 발언권을 주고 야당은 발언권을 안 줍니까? 3분도 아니고.

○김희정 위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위원회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위원장 맹성규 자, 위원님! 위원님!

○이소영 위원 여야의 문제 아닌데 자꾸 발언권을 안 주세요? 왜 김희정 위원님만 발언하고 저는 발언권을 안 주세요?

○김정재 위원 그거는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이소영 위원 위원장 알아서 하는 거 지적해 놓고 뭐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래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회의를 말씀대로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하는데 불쾌하거나 이렇다면 의견 주시는 게 맞는데 이번 거는 김 위원님께서 조금 과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김희정 위원 제가 과했다고요? 저는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그렇게 따지시면 위원님이 하시는 거 지금 편안한 겁니까? 그게 편안해요?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위원님이 하시는 게 편안한 거지요.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위원장이 한마디 한마디 답하는 이런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때까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앞으로 보시면 되지요.

○김정재 위원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위원장이 중간에 다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위원장 맹성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고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대책으로 아까 발표하신 것 보니까 자발적 공개 권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난, 아까 벤츠가 속인 것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로밖에 처벌 못 한다라는 답변이었는데 그러면 역시 자발적 공개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대응할 수 있는 법이 표시·광고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자발적 공개는 지난주에 이루어졌고요. 9월 초 목표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정부 대책에는 이것을 의무와 함께 만약에 허위사실이 공포되면 처벌하는 내용 등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논의 범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로 보면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희정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배터리 이력체를 패스포트체까지 해서 유럽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기차라서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다른 배터리 업체에 소위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배터리 패스포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 인증제, 지금 보통 다른 부품들은 자가 인증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하는 공공에서 인증해 주는 인증제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력관리제 그다음에 아까 공개하는 것은 실명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종합적으로 대책에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공개하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공개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 주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옆에 있는 자동차나 옆에서 보는 사람도 이 자동차가 어떤 배터리를 달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려면 배터리 있는 쪽에 부착하는 시스템까지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동차는 소위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라고 자동차에 표식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논의를 한번 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왜냐하면 자동차 구매했던 사람은 알고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슈는 옆에 있거나 같이 주차를 하거나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불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공개하는 것, 인증제 이력관리제뿐만 아니라 실증제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동차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화재 진압 장비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는 별도로 필요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일반 장비가 아니고 질식포라고 하는 것하고 또 무슨 침수조에다가 넣어야 된다든지 일반 화재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대비해서 현재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와의 밸런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제가.....

○**김희정 위원** 얼마나 보완해야 되는지, 대책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추측입니다마는 아마 상당 부분 갖추어져 있는 장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 대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아마.....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지금 같은 수치라면 얼마만큼 보급이 될 것이고 또 이번 같은 사고 규모를 봤을 때 필요한 장비에 대한 예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추계나 또 관련 예산이 국토부로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번 대책에 아마 종합적으로 담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다음에 충전율이 사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충전율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해서 뭐라고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희정 위원** 맞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건지 효율성에 대한 건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

한데 이번에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서 마치 충전율 90%로 제한하는 것이 유의미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제조사라든지 이런 데의 책임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오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율과 사고율은 명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확한 입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서울시가 발표를 한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9월 중순 목표로 서울시가 일종의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준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준칙을 과연 어떤 식으로 제정할지, 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도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더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에 대해서 국토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수고하십니다.

철도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입니다.

○**복기왕 위원** 전국에 있는 많은 역 광장에 다양한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복기왕 위원** 그 조형물을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복기왕 위원** 모두가 다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설치를 하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건설사업 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철도시설 운영자인 코레일 아니면 또 철도 관계.....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협의 없이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인데 용산역이 상징적으로 보면 과거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열차를 타고 출발했던 그런 상징적인 곳이라 그곳에다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왜 협의가 안 된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당시에 노동자상 설치를 위해서 협의했는데 승객들이 이동 동선과 겹치고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이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동 동선과 겹치고 불편하기 때문에라는 것이 흔한 이유지요. 얼마 전

오세훈 시장도 지하철에 있는 독도 상징물을 그렇게 동선에 불편함을 준다라고 해서 없앴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를 했더라고요, 1250만 원 정도. 지금도 현재 계속 부과 중이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지금 불법으로 또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변상금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용산역과 동대구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동대구역이 서울역에 이어서 전국 2위의 이용률을 보인다라는 보고가 있던데 맞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저도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기왕 위원**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용산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왜 이런 기준을 준용하지 않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동대구역광장 같은 경우는 아직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이고요.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한 표식은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복기왕 위원** 잠깐만요.

관리 위탁만 했지 그것에 대한 소유는 여전히 국가 소유이고 그곳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시장 시절에 온양온천역광장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공문을 보내고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런 식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뭐 한다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못 했어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 전혀 없이, 마찬가지로 온양온천역도 아산시에서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했습니다, 못 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동대구역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기준을 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동대구역 데크, 동대구역광장은 철도 건설법상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관리권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기왕 위원** 준공이 되지 않은 것은 아까 문제가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가 없었던 시설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눈감고 있었던 것 자체가 직무유기애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용히 남모르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SNS를 통해서 떠들썩하게 소문내 놓고 진행했는데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부처 분들이 눈감고 있었어요. 이것 직무유기애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설 자체가 대구시의 자체 예산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복기왕 위원** 마찬가지로 온양온천역도 시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소녀상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말씀은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기관의 문제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준공 이후에……

○**복기왕 위원** 그래서 철거하실 겁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정상 준공 이후에……

○**복기왕 위원** 철거하실 겁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정상 준공 이후에 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준공 이후에 할 게 뭐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고요 건설 과정에서의 관리권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리가 끝나고 준공이 된 이후에 저희 국가철도공단에 권원이 넘어왔을 때 그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아까 처음 시작을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적용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시킨다면 이사장님 그런 말씀 못 할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 들어서 왜 이럴까? 얼마 전 8·15 광복절 행사도 우리가 두 쪽이 돼서 못 했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공공이 다니는 장소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인 분란이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평계를 대고 있는 것, 저는 직무유기로 해당된다라고 보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대로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준공 처리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권영진 위원** 동대구역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동대구역광장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그냥 평지에 광장이 조성된 게 아니라 밑에 기차가 다니고 있는 길 위에 고가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소유권이

철도공단 거냐 대구시 거냐라는 게 불명확해요. 그 부분들이 자료로 정확하게 판명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서로 주장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부분들을 개체해서 광장을 넓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동대구역광장 공사도 아닙니다. 교통광장 공사로 지금 하고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이것을 대구시 소유로 할지 아니면 한국철도공단 소유로 할지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 허가가 아직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다른 역광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논의를 계속, 정확한 논의를 하려면 법적으로 동대구역에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광장 이 부분들이 한국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재산인지 아니면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 자료들을 제출을 받고 난 이후에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우리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취지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내가 여기서 또 한숨 쉴 수도 없고 이제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철도시설공단 지금 쟁점이 뭐냐하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유지 관리 기능에 이런 조형물을 대구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철도시설공단하고 과연 협의가 됐느냐, 협의가 안 됐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국가나 철도시설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이건 거예요.

그런데 간사님 말씀은 대구시에 권한이 있다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의 권한 밖의 일을 했다. 대구시의 권한 밖의 일을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오늘 보고서도 이렇게 했지만 그냥 두둔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면 법적으로 검토의 견을 정식으로 제출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이 보고서에 쓴 것처럼 나중으로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중으로 미루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복기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권 위원님 질의 시간에 다른 각도에서의 질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의 질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의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여쭙고요. 이것 가지고 제가 길게 갑론을박할 생각 없습니다.

○권영진 위원 제가 복기왕 위원님 말씀에 반대 의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시설공단에서 법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그걸 가지고, 오늘 중으로라도 회의 중이라도 제출하세요. 있으면 제출하세요.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준호 위원** 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신상발언을 하셔서 저도 그냥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활가불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07년 대구시하고 철도시설공단이 계약을 맺었어요. 사업추진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시설물과 토지 같은 재산은 갑, 즉 철도시설공단의 계획에 따라서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11조에 나와 있고요. 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장은 설계 공사 시행 등 이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상호 협의해야 된다, 1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철도공단 모릅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시고 자꾸 회피하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동료 위원들의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을 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박이 있을 때는 본인의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세요.

○**복기왕 위원** 제가 이것은 국유재산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손명수 위원님께서 ‘거기가 누구 땅이냐?’, ‘국가 땅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국토부, 지금 논쟁 지점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이면 합법적이라는 것을 법률검토서가 됐든 의견서가 됐든 제출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밖의 권한 행사를 했다고 보는 거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말대로 나중에 준공 이후에 철거를 검토하겠다,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제출을 하시고 없으면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권선·영통 지역의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이번의 8·8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빌라 위주의 전세사기 사태 잇따르고 나서 빌라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게 되니까 그랬는지 이번에 비아파트 대책을 아주 강하게 내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의욕은 좋은데 너무 강하지 않나 또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빌라의 무제한 매입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정상화될 때까지’라는 추상적 표현 또 ‘무제한’이라고 하는 불확실이 가득한 대책,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목표 제시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굉장히 엄청나게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파트 수요로 옮겨 가고 해서 지금 당면한 주택시장 불안의 기본 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비아파트의 공급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대책을 냈는데 저 표현들은 위원님께서 애매한 표현을 썼다라고 질책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런 게 현실과 국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3번 보면 올해 초 LH를 통한 국토부 매입임대 계획이 3만 7000호였지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염태영 위원** 7월 말 기준으로 매입 실적 신축·기축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진행됐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위원님 제시한 자료는 1581호라고 그러는데 매입이 완료된 것은 저 정도 수치일 겁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3만 7000호 중에 3만 6000호를 더 매입해야 되는 게 남은 5개월간의 계획 실적 달성이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매입약정을 맺는 게, 매입까지는 아니고요 매입약정을 맺는 겁니다.

○**염태영 위원** 그다음 자료 4를 한번 볼까요?

LH의 최근 신축 매입임대 실적 2021년도에 57% 2022년도에 33% 23년도에 21%, 올해는 반 이상 지났는데 3.6%,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게 지난 몇 년간의 실적치이고요. 금년 초부터 사실은 금년에 3만 7000호 또 내년에 몇만 호 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연초부터 서둘러서 매입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지난주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 신축 매입이 9만 4766호로 예년의 실적을 훨씬 초과하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목표라든지 또 현재 지금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자료로 단순히 비교해서 비판할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잘못된 게 아니고 맞는 자료인데요. 지금 금년 초부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말에 부임한 이후부터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2020년도에는 100% 달성한 것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020년도의 목표가 몇 호였나요? 2만 호인데, 21년 22년에 계획이 좀 늘어났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 이후에 금년 초부터 LH공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바로……

○**염태영 위원** 장관님 부임 이후에는 많이 바뀌었다 이런 뜻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주 말까지 신축 매입약정 신청이 들어온 것이 9만 4766호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약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약정을 하면 사주겠다는 예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짜 매입하는 거는 완공이 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또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약정까지는 금년에 한 5~6만 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태영 위원**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전에 이렇게 안 됐던 사례도, 이전에도 그런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경우도 4400호 중에서 27호밖에 못 한 것이 지난번까지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아마 단기간 내에 2만 호 가까운 것에 대한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전세임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계획은 좋고 그 의지는 좋은데 실적이 나오기가 어려운 현재 같은 모습들이 지금 빌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주택정책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 과정 중에 의지만 높고 실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것들을 강제하거나 그런 목표 관리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감사합니다.

제도적으로 걸림돌 되는 것은 제거를 했고요. LH의 인력이라든지 예산 배정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 매입에 대해서 전담부서 설치라든지 또 LH 가능 인력 이런 것까지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면밀한 집행 계획과 시행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쿠팡CLS 근로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더니 채 60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택배사들의 주간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택배 물량 또한 그와 같은 기준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지금 과로사로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심야배송 새벽배송 로켓배송 같은 일들이거든요. 노동강도가 훨씬 세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새롭게 실태 조사를 하고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로사와 같은 문제 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터질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택배 종사원들이 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8월 5일 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고 지난주에 아마 쿠팡이 화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점검을 잘해 나갈 예정이고요.

○**염태영 위원** 근로 조건 중에 일부를 개선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러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덮어 갈 수가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표준계약서대로 제대로 위탁구역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대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단계로 심야배송 새벽배송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근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제2의 사회적 합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재 저희들이 생활물류법에 의해서 권고 조치를 한 바가 있고 표준계약서를 좀 더 개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한 다음에 만약에 뭔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심야배송을 바라는 소비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 단위의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런 단계까지 악화돼 간다 그러면 좀 더 큰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합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께 질문했을 때 장관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회적 합의 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시을의 안태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해서 국토부 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장차관 서울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여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정책 틀린 정책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의성이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정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발표를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도 좀 해 보고 우려스러운 얘기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이 발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정책 목표가 좀 정확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발표를 하실 때는 주택 42.7만 호를 공급해서 아파트 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삼사년 내에 공급이 가능한 정책인지 이것이 일단 우려스럽고요.

특히 올 초에도 발표했던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재개발 요건 단축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매입임대 확대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이나 지난 7월 18일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PF 보증 확대 비아파트 사업 지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이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보인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 여기에서 도드라진다고 보는 것이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유도하려는 부분만 유독 도드라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미 지난 전체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특히 인허가나 착공 준공 이런 것이 시점의 차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게 이 8·8 부동산 대책으로 이렇게 발표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다가올 주택 위기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공을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되는 정책이 결국 여야 누구든지 간에 다음 정권을 갖더라도 한번 해보지도 못한 것 때문에 심각한 정책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실시되는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현재 이 정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께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면에서 아주 대단히 잘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발표한 대책을 이제는 실제로 증명해 내는 겁니다. 증명해 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증명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42만 7000호 공급 계획을 뜯어보니까 어쨌거나 정비사업 13만 호 1기 신도시 4만 6000호 매입학약 3만 6000호 선분양 전환 5000호, 그러니까 21만 7000호는 사실 이번에 섞어서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게 기존 공급계획인 거고 실제로 이번에 신규 택지 공급하겠다는 신규 공급계획은 택지 그린벨트 풀겠다는 8만 호나 토지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2만 호 신축매입 11만 호, 그래서 실제로는 21만 호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비사업으로 보는 13만 호, 4만 6000호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실제로 이게 주택 공급을 하는 데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멀실주택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이 13만 호, 4만 6000호에는 멀실주택 수가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안태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재개발로 통상 증가되는 게 2%에서 많게는 15% 재건축으로는 20%에서 40% 증가한다고 보니까 한 30% 잡더라도 사실은 이건 17만 6000호에서 대충 5만 호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가 야심차게 주택 공급을 해 보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안태준 위원님, 정부 대책이 꼭 성공할 것을 기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적해 주셨듯이 주택 공급은 시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정책의 목표이고요.

저희가 제시한 42만 6000호 중에는 단기간에 이삼년 안에 공급이 될 것 또 중기로 한 사오년 걸릴 것 그것보다 더 장기로 갈 것까지 다 합쳐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석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온 더 테이블(on the table)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는 게 21만 7000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정비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가 있거나 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하는 것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몇 년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한 13만 호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21만 7000호는 기존에 온 더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하는 것들이고 나머지 매입약정 11만 호 또 신규 택지에서 10만 호 등 21만 호는 기존에 계획이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계획을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에 있어서는 새집이 꾸준히 계속 공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 주민들은 집 문제보다는 일자리 문제로 지금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이 갈 수 있도록 SOC라든지 또는 이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꾸준히 새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대책을 만든 것이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책 발표한 것이 그냥 어림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꼬박꼬박 따져보고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것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면 사실은 누가 수혜자가 될지 그거는 저는 어느 당이 아니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과 또 협력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멸실주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거정비사업으로 가장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는데 멸실주택이 생기는 그게 우리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또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문제 중의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전세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쪽에 새로 생기는 주택이 다 네트(net)로 순증은 아닙니다. 물론 멸실된 주택까지 치면 순증은 한 삼사십 프로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 수요는 낡은 주택보다도 새집에 더 수요가 쏠려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주민들도 낡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 수를 똑같이 일대일로만 보실 것이 아니고 좀 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측면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대책 또 지역적인 전월세 불안정 문제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체지도 만들고 해서 방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태준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쉬우시면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위원** 예.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제목이 이렇게 붙은 거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서범수 위원** 그게 수도권 중심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집값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서에 보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비아파트·지방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되는 차별화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왜 수도권만 중심을, 물론 수도권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해서 그렇다고는 하나 또 지역은 지역대로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서범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역의 미분양 대책도 같이 포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중심의 대책만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지금 이것은 주택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급 대책이니까 공급이 지금 오히려 많아서 미분양을 두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해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제 이야기는 차별화시키라는 거지요. 차별화시켜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의 대책이 필요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뭔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늘상 왜 수도권만 관심을 가지느냐 지역에 사는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문제를 따로 떼어서 한 번 더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지역을 위한 시각에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대책이든 다른 이름을 붙여서든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한번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코레일 사장님 나오셨나요?

코레일이 왜 자꾸 사고가 납니다? 지난 9일도 그렇고 18일에 케도 이탈 사고가 나고.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특히 18일 케도 이탈 사고 났을 때 수습하는 부분들도 좀 엉망이었다, 언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구로역 사고와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사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철저히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신다 하는데 지난 4년간 철도 사고가 몇 건쯤 난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철도 사고가 보통 한 60건에서 50건 사이 정도 났습니다.

○**서범수 위원** 4년간 한 183건 정도 났거든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연간 한 사오십 건 정도 났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코레일 산하에 철도안전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철도안전조사위원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19년에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어쨌든 사고에 대한 원인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자 만든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183건의 철도 사고가 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철도안전조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금방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한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엄연히 철도 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철도안전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운영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초기에 결성을 하고 한 몇 차례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번지면서 좀 침체됐다가 그다음에 문제가 된, 이게 내부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상치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계속 운영이 좀 안 돼서……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안전자문위

원회를 만들어서 한 열여섯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 정비가 필요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실 바에야 없애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좀 이답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토부만 너무 쳐다보는 것 아닌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토부에서 너무 그립감 세게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하여튼 국토부든지 코레일이든지 정말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기관이 상충, 이런 것은 사실은 병립해도 되잖아요. 양쪽으로 다 같이 조사를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진단을 하고 다음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한문희 사장님, 지난 9일 날 구로역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명복을 빌고 또 사고 당하신 분도 빨리 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첫날 조문도 같이 함께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로 후진국형 사고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인접선 차량 운행을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인접선 차단이 안 됐던 이유가, 저희들이 작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작업계획서가 작업자들과 관리감독자가 작성하는 유사한 일들, 여러 곳에서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가 코레일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5만 2000건 정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도 바텀 업 식으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때 위험성이 제대로 적시되는지를 한번 보고 각 소속 간 공유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집적은 그쪽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개선방안을 보고한 게 있는데요. 장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

수칙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번의 인접선 선로 차단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인접선 선로 차단에 대한 것은 매뉴얼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윗단에 어쨌든 그런 운행선로 지장 업무를 할 경우에는 차단을 하라는 그런 지침 자체가 큰 매뉴얼 속에 다 규정은 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미 규정이 돼 있는데 안 지켜진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아니, 규정에 돼 있습니다. 철도에서 운행하는 선로의 공사나 어떤 지장 업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다 차단을 하라고 돼 있고요. 다만 위험지구를 벗어난 상례적인 경우에는 차단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다음에 쿠팡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쿠팡CLS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게 있지요? 근로 여건 개선하는 네 가지를 보고 했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 국토부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은 게 있습니까?

다른 실무자라도 들은 분 계세요? 노동자들 의견 들은 적이 있느냐고요?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김근오**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누구 이야기 들었어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김근오** 쿠팡의 노조랑 저희가 의견 수렴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의견이 수렴된 게 지금 대책 네 가지예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김근오**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개선방안보다는 그쪽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주로 들어서……

○**윤종오 위원** 애로사항 들은 게 대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반영도 한 개도 안 된 대책을 가져와서 이게 대책이라고 내놔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체인력 투입이다, 대체인력 투입해서 하면 결국 수행률이 미달되거든요. 미달되면 이게 또 클렌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간에 10시간 이상 일해서 주 5일제 근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야간 할증을 감안한다면 노동부에서 권고한 시간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제가 현장을 직접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5시간 정도 같이 분류도 하고 배달도 같이 했었는데요. 분류를 지금 쿠팡 측에서 다 책임진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실무자, 맞아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김근오** 예, 대부분 하고 있는데 소분류는 기사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대부분 소분류가 아니고 사실상 기사가 가져갈 수 있는 A B C D가 있더라고요. A B C D를 한목에 다 실어서 대차에다가 그냥 갖다 줘요. 그러면 자기 것을 자기가 알아서 또 챙겨 가야 되더라고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김근오** 예, 그건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 공간이 부족해서, 차가 최소한 네댓 대 더 들어와야 되면 실제로 분류할 수 있는 공간은 두세 대밖에 안 되고 다른 쪽에서 분류하다 보니까 분류가 아주 더 늦어지고, 늦어진 이유가 지금 사측에서 그렇게 네 가지를 한목에 분류한 것이 늦게 왔는데 8시까지 배달을 안 하면 거기에는 또 클렌징을 매기는 이런 원인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류라는 것이 최소한 그 사람이 가져갈 것을 분류해 주고 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주소지별로 다시 세분류를 또 하더라고. 그것은 본인이 한다손 치더라도 A B C D가 돼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분류해 줘야지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고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김근오**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오 위원** 협의를 제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대책을 내놓는 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이 쿠팡하고 대화 과정에서 노조 대표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쿠팡이라는 개별 회사의 행태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미시적으로 뭐를 어떻게 지적 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큰 틀에서 지켜야 될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른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종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먼저, 지금 그런 대화 과정이라든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개선된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쪽으로 한번 제도를 운영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개선이 안 된다면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하는 그런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안 하고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예, 그렇게 하세요.

○**윤종오 위원** 동대구역광장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광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권을 위한 보수표 결집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국토부가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꾼 적 있습니까? 일단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저희 국토부가 국민들 민생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사실은 그런 논쟁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국유재산인지 안 그러면 공사 중에 있는 재산인지 그 과정에 관리 책임이 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보고……

○**윤종오 위원** 아니, 일단 오늘 확인된 것은 국가 땅이고 관리 주체도 국토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그게 지금 철도공단 이사장의 답변이라든지 이걸 보면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그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에 있어서 아까 권 간사님께서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위탁의 사항이었고……

○**윤종오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탁받은 사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 발언시간이 너무 줄어드는데요.

그런 것을 지금 논쟁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진작 정리가 됐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돼야지 안 그러면 또 동상까지 세울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무슨 애칭으로 그런 명칭을 정합니까?

홍준표 시장이 하고 싶으면 자기 집에 있는 아파트 거실을 박정희거실로 정하든지, 이것 알아서 하시라고요. 왜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시설을 자기 멋대로 정합니까? 저는 표지석, 표지판입니까? 빨리 철거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장관님, 오전에 이번에 8·8 대책 발표 전에 야당과 협의 못 한 것이 관행이고 시스템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청와대에서 일해 봤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도 적어도 발표 전날에는 야당에 관련 대책을 미리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 했던 분에게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20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

관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같은 주장을 계속 고수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행이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관행이라든지 생각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윤종군 위원** 관행이고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윤종군 위원** 장관님, 제가 봤을 때는……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종군 위원** 그동안 장관님 성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단독 판단으로 야당에게 얘기 안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윤종군 위원** 아니면 용산이나 다른 데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하여튼 제가 제대로 못 챙긴 탓이고요. 제가 당연히 야당의 주요, 전 위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윤종군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린 것은 제 개인의 불찰이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개인 불찰이에요? 용산이나 다른 데서 야당에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제 개인 불찰이고 제가 백배, 아까 여러 번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종군 위원** 하여튼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몰랐지만 그래도 저는 위원장님이나 야당 간사님은 전날 얘기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TV 보고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토위 야당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위원장님과 간사분들이 얼마나 화나고 자괴감이 크셨을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대단한 결례를 범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번에 정말 큰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토부에 그린벨트 내 토지의 법인·개인 소유 이런 형태, 비율이나 실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된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린벨트 내 토지에 대해서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아직 잘 모르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전수조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지난 2021년 3월에 있었던 LH 사태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21년 3월.

○**윤종군 위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500만 평에 일부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던 겁니다. 그 후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땅 투기를 해서 국민들 비난이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달에는 최근 해제된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그린벨트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님 장모인 최은순 씨 땅이 상당 규모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는 많은 국민과 환경단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언론에서는 향후에 풀리게 될 그린벨트 땅에 법인 기업들 소유 땅이나 대통령 친인척 정치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의 눈길을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 해제 대상 지역이 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윤종군 위원** 당연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할 때 하는 관행적인 조사와 자료 작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 땅이 있어서 이 지역은 빼다든지 넣는다든지……

○**윤종군 위원**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고요.

○**윤종군 위원**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도 사후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사전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나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만약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A 씨라는 분의 땅이 있으면 그것을 제척하고 가는 게 맞다는 뜻이신지……

○**윤종군 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면 그 사람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구 지정할 때는 소유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보상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지, 어느 누구 땅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는 사실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윤종군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그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린벨트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사실은 그 지역에 입주하게 되는 분들, 이번에는 주로 젊은 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받도록 하는 게 맞지요. 그 땅은 땅값에 의해서, 평가된 가격에 의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상이 될 뿐입니다.

○**윤종군 위원** 위원장님, 조금 추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윤종군 위원** 진현환 차관님, 올해 총선 50여 일 전이었던 2월 20일 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2025년에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돼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전략 산업에 의해서 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때 수도권 그린벨트는 어떻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요. 쌍따옴표를 쳐 가지고 차관님 발언으로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하고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수도권 그린벨트 지금 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때의 원인을 수도권 과밀 문제를 원인으로 꼽으셨는데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이번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 인근 수도권의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서 하겠다는 이유는 결국 현재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대한……

○**윤종군 위원** 아니, 지금 6개월 전에 차관님이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하고 정반대 정부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8·8 대책 수립 과정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차관님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여러 가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도권 그린벨트도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한 나라의 차관께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적으로 전통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이슈인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입장이 호떡 뒤집듯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6개월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 과밀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검토 다시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지방은 소위 말하는 GB 등급 1·2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군 위원** 아니,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섯 달 전에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입장이 바뀌었냐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은 2월 달 정확한 워딩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윤종군 위원** 아니, 이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쌍따옴표 쳐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월 달부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사실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한 6월 초순부터 조금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상승의, 거래량도 확 늘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통상 이럴 때는 관계 부처가 모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대책을 할 건지 하는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 위주 대책을 먼저 하자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금융위에서 수요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후수요관리 대책을 하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공급을 할 거냐.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전부 장기

대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윤종군 위원** 장관님, 알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국민을 대리해서 일하는 공직자분들의 입은 천금같이 무겁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 말씀에……

○**윤종군 위원** 차관께서 6개월 전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겠다, 검토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6개월 지나서 이렇게 큰 국가적인 과제를 입장 바꿔서 해제하겠다 이러면 어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점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윤종군 위원** 정권의 방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입장이 변할 수 있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께서 함부로 입장 바꾸고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이런 것들은 꼭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 충분히 동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다 보면 본인 질의를 충분히 못 하셔서 추가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추가질의를 한 2분 드리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한 3분 정도의 질의를 안 하시는 전제로 해서 추가로 드리니까 2분을 더 쓰시는 위원님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오늘 동대구역광장, 박정희광장 표지석 관련해서 야당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지자체장을 해 본 입장에서 그 지자체 일을 너무 국회에 끌어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종오 위원께서 아주 적당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역도 보면 의림지 옆에 있다고 그래서 의림지동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김삿갓 고향이라고 김삿갓면으로 바꾸고 또 한반도 지형이 있다고 그래서 한반도면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그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 김대중컨벤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정율성 역사공원을 광주시장이 만든다고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지역의 시민과 또 의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철도 땅이냐 지자체 땅이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자체는 너무 지엽적이고요. 저는 정쟁을 즐기시는 지자체 단체장이 그랬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철도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동대구역-경주 간 케도 이탈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요. 기관차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해서 탈선이 추정된다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고속철 시대에 철도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일부 탈선 사고로 인해서 차량 157대가 거의 평균 4시간을 정차했어요. 거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피해를 봤습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철도 기관차 정비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이참에 앞으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철도의 안전점검 또 대책에 대해서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점검과 안전대책에 또 고속철에 관련돼서는 더더욱 철도공사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도 지적했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전기차 화재사고 요즘에 아주 핫이슈입니다. 아파트에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아파트별로 붙여 놓은 데도 있고요. 그런 것이 국민적 불안으로 확산되면 될수록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5년간 182건 화재가 발생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특히 지난해는 2021년에 대비해서 무려 3배, 72건의 화재가 전기차에서 발생했어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차량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또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대한 기술 겸증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벤츠라는 차에 화재가 났는데 그 배터리가 중국산이다 하니까 최고급 차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중국산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제가 보니까 전기버스가 점점 늘어나요. 이것은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들어났는데 전기버스 6700대 중에서 약 40%, 2600대가 중국산입니다. 이참에 산자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국산 버스가 시장점유율을 거의 80% 이상 점유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도 한번 세워 보세요.

당연히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현대차나 국내차들이 가격 대비 도저히 경쟁력이 없으니까 중국산을 사오겠지만 중국산을 구입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용의가 있고요.

지금 이미 산자부와 관련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수소버스를 대안으로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자부장관하고 저하고 둘이서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실무 부서를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4자가 일단 MOU를 맺어서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도 같이 넣을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미세 조정하고 있고 조만간 중앙부처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엄태영 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엄태영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화성의 현대차 연구소도 가서 수소버스도 타 봤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수소 시대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장경제에만 맡기다 보니까 중국산 버스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더 문제다.

또 이뿐만 아니고 화물차도 전기차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화물 전기차 발생 건수도 지난 5년간 총 68건 있었습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대량의 유해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 등을 운반하는 도중에 화재가 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대형

사고의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전기버스들 충전을 차고지에서 하는데 거기에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버스의 연쇄 화재로 이어지면 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 같은 것도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버스차고지에 대한 안전 대책도 좀 해 주시고, 여하간 전기버스에 대한 또 전기차에 대한 우려와 그런 위험이 국민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정부에서 안전대책을 세워서 국민적 불안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 사항들을 이번 전기차 안전대책, 9월 초를 넘기지 않는 목표로 지금 관계부처 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가 승용차 외에도 버스나 대형트럭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또 화재가 나면 아주 대형화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방장비를 적절한 포인트마다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자부하고 협의하셔서 전기버스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세워서 국감 전에 저희 사무실에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국토부장관님, 8월 1일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과장된 뉴스나 왜곡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모든 전기차는 화재 위험성이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전기차 화재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제가 보고받은 자료도 확인한 자료로는 일반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화재가 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대당 화재는 비슷하다는.....

○**이소영 위원** 오히려 통계는 전기차 10만 대당 화재 비율이 더 낮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쨌든 크게 차이 없는, 수는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공개된 몇 가지 통계를 보면 화재가 난 차량들은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했거나, 배터리 제조 결함이 있었거나, 차량 자체에 튜닝이

나 충격이 이루어진 경우였거나, 충전기나 충전단자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말하자면 원인이 있는 사례들이고요.

인천 청라 화재 사고, 최근에 일어난 사고에서도 곧 원인이 밝혀질 텐데 만약에 벤츠가 차를 엉망으로 만든 거라고 하면 리콜을 시켜야 될 거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같은 모델이 리콜된 바 있습니다. 배터리에 결함이 있다면 그 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시켜야 되겠지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모델, 특정한 차량, 특정한 상황에서 제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들에 대해서 마치 전체 전기차의 문제로 말하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것을 쓰면서 공포가 포비아가 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잉 반응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 2016년에 삼성 갤럭시노트7 모델에서 폭발과 화재가 연이어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집 안에서 평 터지고요 당시 비행기 기내에 갤럭시노트 반입이 금지됐었고 전 세계적인 리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스마트폰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원인을 규명해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다들 했던 거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라거나 이런 걸 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은 화재 발생 사례들이 특정 제조사의 제작 결함 문제인지, NCM 배터리가 더 불안정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BMS 시스템의 저사양 문제인지, 충격의 문제인지, 외부 온도 문제인지 이런 사례와 원인을 분류화해서 마치 지금 돌 아다니는 61만 대의 전기차가 모두 화재 유발 설비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을, 그렇게 오도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기차라서 대형화재가 난 거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진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차에 비해서.

○**이소영 위원** 이번 인천 사고가 대형화재로 이어져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건데요. 지하 공간에서 대형화재로 이어진 거는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지하공간의 화재 취약 특성에 더 기인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인천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된 거지요? 누군가가 껌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작동이 안 됐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LH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뒤에 LH 사장님도 계신데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소화 실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부 스프링클러만 작동이 돼도 인접 차량의 화재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거의 차단이 되고 하부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게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번 사고가 확대된 거는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 전기차 출입만 금지시키면 이번 화재 같은 사고가 막아진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대부분 차를 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세 번째, 전기차 충전율이 높으면 화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입증된 바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충전율하고 화재 가능성은 입증된 적이 없는 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소영 위원** 이번 청라 화재는 충전 중도 아니었고요 과충전 상태였는지 충전율이 얼마였는지 아무것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청라 화재 사고 딱 일주일 만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월 1일 날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시 대책이 9일 날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 더 쓰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이소영 위원**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면)

서울시 대책 이런 겁니다. 90%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한 설정된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준칙에 이 내용을 서울시가 담겠다, 그런데 이 준칙을 참고해서 각 아파트단지가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면 된다, 이게 대책의 내용입니다.

장관님도 보셨지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주민들 간에 굉장히 다툼이 발생하거나 그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벽살 잡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인구 천만의 수도 서울을 이끄는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경솔하고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거에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책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치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충전율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청라 사고만 하더라도 아직 충전율도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충전율을 기준으로 화재 예방을 하겠다, 이 판단의 근거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문구가 되게 재밌는데요. 딱 이 한 단락입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냥 유효한 방법으로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서 하나 인용이 없습니다. 퍼센티지 하나, 숫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준칙을 배포하겠다니 너무 경솔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무슨 대책 빨리 내기 경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 문제점은 본인들도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으면서 시민들에게 정책적 판단을 떠넘기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충전율과 화재가 진짜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법이나 조례로 막아야지요. 이게 금지시켜야 될 정도로 화재 위험이 큰데 그걸 아파트 주민들이 임의로 판단해라, 자율적으로. 그래서 벽살 잡게 부추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9월 달에 대책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정부의 대책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무책임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대책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근거에 기반한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미비점 한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우선 급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에 반영이 안 된 내용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대표발의했던 금융권 관련 내용,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 같으면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대출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책임을 완전히 너무 무책임하게 부실 대출 과다 대출 심지어 결탁 의혹까지 있는 이런 대출,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가릴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을 걸로 봅니다만 금융권이 사실상 전세사기의 공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금융권이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가해자 격인 금융권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밀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행령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여서 이번 통과되는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교하게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엊그저께 차관님도 그런 취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 방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두 가지 지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대책 아니냐 이런 지적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이익 사유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또는 대책이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근거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팩트를 확인해서 조기에 당기는 것이 21만 7000호 또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21만 호 해서 42만 7000호를 발표한 것이고요. 저는 개인

적으로……

○**황운하 위원** 실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현 가능하다.

○**황운하 위원** 저도 꼭 실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가능하면 초과 실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운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이익 사유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강남권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지금 공공택지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거든요. 공공택지의 형태가 되면 현행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거기에 당첨되시는 분들이 로또분양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황운하 위원** 장관님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좀 남아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 정보가 누설이 되거나 이런 분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대책 문제는 추후에 제가 또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그다음에 코레일 사장님 얼른 좀 나와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저도 2분만 더 쓰고 이따가 보충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그렇게 하세요.

○**황운하 위원** 코레일 사고 좀……

먼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부상당한 직원분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장님이 27년 철도맨이세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근무한 기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근무한 기간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예, 27년 철도맨.

그래서 아마 코레일의 현장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현장 사정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장님이 오셨다고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사장님이 발언을 하시기를 ‘이렇게 위험한 작업인 줄 몰랐다’ ‘몸 잘 아끼고 하라고 해도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들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선의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선로에서 작업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현장 사정을 가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하면서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걸로 보입니다. 직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첫 번째 ‘이렇게 위험한 작업인지 몰랐다’는 표현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황운하 위원** 아니, 워딩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위험한 작업은 아닌데’라고 아마 말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것은 물론 그 자리 자체가 유족분들께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합니다……

○**황운하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유족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정이 상당히 같이 동조되면서……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오해할 상황이에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황운하 위원** 무슨 말씀을 해도 오해를, 꼬투리를 잡는다 그럴까 이렇게 격앙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유족들에게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 당시에는,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들이 나오고 언론에 나서 그 이후에 유족들 만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운하 위원** 알았습니다. 유족들에게 대면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사고 발생 후에 보고받고 또 사고수습본부 차리고 이 체계가 굉장히 늦더라고요.

사장님도 숙소 또는 댁에 사고 발생하면 비상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요즘은 주로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황운하 위원** 휴대폰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게 비상시에 대비해서 있을 텐데?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사택을 쓸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저는 사택을 쓰고 있지 않아서……

○**황운하 위원** 사택을 안 써도 그런 건 좀 비상시에 가동을 해야 될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보고도 늦고 수습본부 차리는 것도 늦었어요. 또 무전기도 잘 안 됐어요. 무전기 안 된 거 아세요, 교체가 안 돼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위원님도 여기 있었지만 무전기가 요즘에 VHF인데 감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음영지역은 아니었는데……

○**황운하 위원** 어쨌든 무전도 안 되고 지코비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지코비는 전체 일반 열차에는 다 달려 있고……

○**황운하 위원** 아니, 사고열차 사고차량.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장비에는 지금 다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달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장비 갖춰야 될 것 빨리 갖추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청주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8·8 대책 나오기 한 달 전에 7월 달에 이미 장관께서는 기자간담회 하면서 폭등은 일시적인 지역 현상이다,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쭉 해 오셨는데 시장은 반대로 계속 폭등 상황에 있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주택 통계가 누락되는 그런 오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래 가지고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주택 통계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부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연희 위원** 감사원 감사 중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연희 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직 안 나왔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연희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8·8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그전에도 이미 한 여덟 차례 정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한 여덟 번 정도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떤 걸 대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 카운팅이 다릅니다 마는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26일 날 대책을 정한 게 있었고요.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27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건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 목표로 발표한 것이고.

○**이연희 위원** 이번에 발표한 8·8 대책의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 부분은 270만 호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42만 호를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에 있는 걸……

○**이연희 위원** 내에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70만 호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결국 그 대책을 재탕 삼탕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발표한 8·8 대책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다들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기후재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기상청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 되고 있고 열대야 현상이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일 연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도시 열섬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그나마 있는 도시 농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정신 나간 행정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8·8 대책을 만들 때 여러 부처와 함께 협동으로 8·8 대책을 만드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의견은 국토부가 제안한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민이 갖고 있는 1인당 도시숲 면적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4.38m²인데 이게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많게는 5배 6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시민 1인당 도시숲 갖고 있는 게 1.2평밖에 안 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결국은 서울을 성냥갑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기후재난 시대에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더 더운 도시 뜨거운 도시를 만드는 게 과연 국토교통부의 정책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린벨트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의 대다수 거의 61%가 그린벨트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래의 도시 생명, 국민의 삶과 직결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장관께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시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민단체들도 참석하고 환경단체도 참여를 해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들 또 단체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구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그린벨트에 몇 가구를 지을 생각입니까?

저도 2분 더 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한 7만 내지 8만 호 정도의 신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제기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모든 규제를 다 풀다고, 8·8 대책의 특징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용적률·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 이런 것들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다 폐지하고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던 뉴타운 사업, 결국 부동산 폭등만 불러일으키고 추진은 못 했거든요.

결국 정부에서 8·8 대책 발표한 이후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지금 다시 폭등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게 투기 정책이지 집값 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번 대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해당되는 부분인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고요.

○**이연희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연희 위원** 쿠팡CLS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겠습니다.

쿠팡CLS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권고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쿠팡CLS가 택배서비스사업체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생활물류법에 의해서 택배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9조에 보면 택배서비스업체에는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게 돼 있지 권고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권고라는 것을 하면서 이행 안 해도 그만인 이런 소극적 행정을 하는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체결한 사회적 합의에도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당 법에서 권고조치 그다음에 개선명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자세히 보세요. 물류서비스사업으로 돼 있는 택배물류서비스사업은 개선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요.

쿠팡CLS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강력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저는 등록 취소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연희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에 같은 톤으로 제가 쭉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권고조치를 선행하고 그게 안 되면 더 강한 강제력을 동원하는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위원님까지 질의가 끝나면 아마 개략적으로 오후 질의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위원님 질의 후에 한 2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의 삶에 상당히 직결돼 있고 또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장관님을 믿습니다. 믿고 또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믿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과거 2020년에도 그 당시에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을 때 그때도 보면 용산정비창에 한 1만 호, 태릉에도 1만 호, 서울의료원, 서부면허시험장 쪽 이렇게 주요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러한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들이 보니까 실현된 게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서울·수도권에 127만 호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또 한 2년 전에도 2022년 8월 달에 27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거의 상당히 실현이 됐는데 올해는 한 50만 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30만 호,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70만 호는 아까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책이 아니고 정부가 출범해서 발표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윤영석 위원** 로드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장기계획이었고요.

○**윤영석 위원** 그게 결국은 250만 호를 5년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70만 호를 5년간 앞으로 하겠노라는……

○**윤영석 위원** 아, 270만 호를 5년간 하겠노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로드맵이었고……

○**윤영석 위원** 목표가 아니고 의지의 표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목표지요. 목표를 제시한 거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인허가 물량이 계획 대비 30% 떨어져서 그게 소위 말해서 공급에 애로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당초에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만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2년도에 아까 지적하신 몇 군데 지역에 개발계획을 발표하고도 성사되지 못한 것들은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해서, 아마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못 하고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 잘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고 국민의 믿음이 있어야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8·8 대책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공공주택 공급 성과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고 또 국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반적으로 인허가 공급이 부진한 것은 사실은 비아파트 부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아주 많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나 이런 것 기피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일부 만났더니 ‘LH가 하는 매입약정주택에 입주하게 됐는데 전세사기 걱정 안 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아파트 건설 원가, 단가 상승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부진했다 이런 부분도 많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에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에 주안점을 둔 것도 그런 면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이번 대책을 보면 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한 37만 호 추진 가속화를 하겠다 이런 대책도 있는데 실제 부동산값이 금리와 상당히 직결돼 있고 연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문제인 정부 당시에 2017년부터의 부동산 가격 앙등도 지금 여기에도 나오지만 서울 선호 지역 주택의 재건축 신축 이런 부분에서 촉발된 것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건축을……

저도 2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윤영석 위원** 재건축 규제를 완화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 확대는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옛날 근무 경험도 있고 하셔서 말씀하시는 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잘 보시면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확 높여 주는 쪽은 가능하면 이번에 거의 배제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 자료에도 보니까 있는데 지금 지방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서울·수도권은 상승을 하면서 특히 서울·수도권 중에서도 특정 지역, 가장 선호가 되는 그런 지역이 지금 상당히 역대 최고가 이런 걸 계속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자산의 양극화를 아주 극대화 할 수 있는 극단화시킬 수 있는 그럼으로써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갈등 요소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제가 보니까 부동산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경제적인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을 제고하는 쪽보다는 절차를 좀 단축해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재건축이 평균 14.5년이 걸리거든요. 14.5년이면 너무나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봄에 발표한 대책 또 이번에 발표한 대책 여러 가지 합쳐서 그중에서 한 5년 내지 6년을 당기고 그래서 8년 9년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건축 기간까지 포함해서 6년 만에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 단축에 주로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 때 국토교통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어렵고 소외받는 지역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춘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국토위 활동할 동안에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계속 강조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제목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인데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국민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포함되고 나는 지역에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계속했을 때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신규 주택 짓겠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 신규로 2만 호 짓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또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해서 규제도 풀어 주면서 재건축을 해서 최대 10만 호까지 짓어 주겠다 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아무리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는 규제도 풀어 주고 집도 새로 지어 주고, 과밀화되어서 교통이 어려우니까 광역급행철도도 놓아 주고, 도로도 새로 놓아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방의 좀 먹고사는 사람이 ‘야, 서울에 투자해야 집값도 올라가지’ 그러면서 돈 싸 들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취해야 할 방향이 맞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참 가슴 깊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수도권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절반이 지방에 계시는데 서울·수도권에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이라든지 또는 그런 걸 느끼지 않도록 지역에는 일자리 위주의 정책 또 주거복지 위주의 정책 이런 것들도 견조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도 다행히 이번 보고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계획이 있더라고요. 미분양 주택의 한 80%가 지방에 존재하는데 CR리츠라든가 PF 대출의 보증 확대라든가 이걸 통해서 과연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대책들이라도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방의 미분양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춘석 위원**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5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장 거기다 주택 지어 봤자 미분양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에 더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수도권에 살기 힘드신 분들이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상시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부동산값이 올랐다 해 가지고 대책이 나오면 이 대책은 수도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방도 큰 도시 중심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 소외된 지역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되고 하잖아요.

저도 2분 쓰고 보충질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제도를,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이걸 막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긴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있습니다. 노력해서, 지역에 살면 적어도 집 문제만큼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처럼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리고 이번 국토부 정책 중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기저에는 서울과 같은 도심에 나대지가 고갈되어서 천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것들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실제 주택을 순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기다 더 좋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고급 아파트를 짓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도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시중에 고급 주택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공급을 촉진하는 대책안이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대책도 마련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춘석 위원**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재개발이라든가 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춘석 위원** 그 법들을 사실 논의하되, 이런 것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정비조합의 배만 불리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면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폭이라는 표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전용기 위원** 건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건폭? 예.

○**전용기 위원** 국토부에서 계속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들도 보도 못한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갖고 오셔 가지고 굉장히 갈라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인권위에서 예방조치 마련해야 된다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진정 나온 것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전용기 위원** 못 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전용기 위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건폭 그것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예방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혐오의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아직도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확인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앞으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전기차 포비아 이야기를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대응 매뉴얼이 없다라는 비판이 계속 따릅니다. 심지어 전기차 합동 TF 올해까지 한 번도 없다가 7월에 한 번 열었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서 민관 합동 TF를 출범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거의 안 했어요. 7월 달까지는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인천에 불나니까 TF 열었어요. 왜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솔직히 전기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못 했었는데 이번 화재를 계기로 주의가 환기된 거고요.

다만 아까 이소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공포라든지 이런 뭔가 또 다른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있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방치했던 거라고 보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니까 더욱이 국민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아무튼 전기차가 지하에 많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신도시에, 화성 동탄부터 시작해서 검단에도 한 곳, 위례, 양주 회천, 양주 옥정,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애초에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장 전부 다 지하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책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옆으로 확산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전용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잘되게끔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주차장을 제대로 잘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점검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려면 스프링클러를 지하주차장에 잘 설치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 합동 TF에서 권고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됐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방관들이 아니니까 급하게 진화할 수 있으려면 덮개라도 씌워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구비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답니다. 우리가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전문 장비가 돼서 개별 아파트마다 갖다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답니다. 소방서에서 빨리 출

동해서 전문 소방관들이 그걸 조치를 해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들고 와 가지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불나면 답이 없다라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곧 발표할 대책에 만약에 사고 발생 시의 소방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당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다가 하나 또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데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 주체가 대구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법률, 법적 권한과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문 법률자문을 받아 보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주셔야지요. 앞으로 위탁받은 단체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대구뿐만 아니고 위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동상 다 세우겠다고 예산하고 하면 오늘 업무보고처럼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리고 사후 처리한다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것은 우리가 준공 나고 나면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반복할 겁니까?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일단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용기 위원** 저도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가이드를 정확하게 안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하나 살려 주기, 홍 시장님 편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수 있어요? 홍준표 시장 때는 봐줘 놓고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쟁을 좋아하는 지자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어떻게, 국가 정부가 다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측면에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정확하게 팩트와 법률 관계를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원칙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문화 사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것 답변이 왔는데요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원인 조사 중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화** 원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 직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뻔하잖아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사망하신 고인께서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운행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지요. 그 안전관리자 뭐 해야 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 작업을 할 때 관계 역과 차단을 낸 상황에 대해서 차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용기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작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규정에 의하면 운행안전관리자의 근본 취지는 철도 운영자들이 작업할 때의 문제가 아니고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외부 공사자들이 할 때 역과 원활한 협의가 안 될까 봐 두는 제도인데……

○**전용기 위원** 작업 인원은 총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업계획서에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작업계획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명이 일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리고 누가 신호수 역할을 안 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신호수라는 것은……

○**전용기 위원** 정확하게 들어와도 된다라고 받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정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호를 줄 수가 있었어야 됐는데 작업계획서랑 전혀 다르게 작업을 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인이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일단은 작업계획서는요 조별로 근무 인원은 4명이 적정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날만 다른 외부 조가 한 번 지원으로 나와 있었던 거지 평상시에는 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발생된 것 사장님은 다 보고받으셨어요? 조사 중이라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보고를 다 받았고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사를 받는 직원만 해도 한 30여 명 되고 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항철위나 노동청 그다음에 사법경찰의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객체의 입장일 수 있어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 중이라서 그 원인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전용기 위원** 책임 소재 때문에 여기서 말씀 못 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아시고 있는 만큼이라도 유가족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지는, 그 억울함을 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사고 다음날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산에 직접 가서. 그런데 유가족들께서는 아무래도 만족스럽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다시 또 광복절 8월 15일 날 한 3시간 정도, 그때는 실무자들까지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영등포역의 다른 조의 사람들까지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유가족인 입장에서는 그게 명쾌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대구 달서을 윤재옥입니다.

오늘 동대구역광장 명칭과 관련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선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역광장이 준공 전 시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구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대구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관리 주체 여부를 떠나서 역광장 명칭을 정하는데, 공식적으로 동대구역 광장입니다마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칭을 명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에는 역광장 명칭을 정하려면 코레일의 역명 정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타부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 장관님, 다시 검토해 보세요.

국토부에서 질문에 대해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지명위원회가……

○**윤재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명위원회는 공식 명칭을 정하는 역의 이름을 정할 때 지명위원회를 하는 거지.

지금 대전역광장이 ‘호국철도광장’인 것 알고 계시지요, 별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거기도 지명위원회 안 거쳤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한 것으로……

○**윤재옥 위원**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장관님 말씀하고 국토부에서 준 자료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공간정보법상 정식 명칭도 아니고 지명 심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그걸 별칭으로 박정희광장으로 하겠다는데 이걸, 법 위반도 아니고 규정 위반도 아닌데 국가에서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이게 왜 여기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기본적으로 그 절차에 맞게 절차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재옥 위원** 그 절차를 좀 따져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아니, 국토부나 철도공사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정할 때는 지명위원회에서 딱 그것 해 가지고 명칭을 정하고 그 모든 역명하고 역광장 명칭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철도사업법에,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별칭을 정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다른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가부를 가타부타라고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재 대상이 아닌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간정보법의 지명위원회의 대상은 아닌 것은 틀림없고요.

○**윤재옥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만 역명을 정할 때는 또……

○**윤재옥 위원** 아니, 이건 공식 역명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저희 규정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윤재옥 위원** 관계없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대구시가 뭘 하든지 간에 저희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뭘 하든 국토부에서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대상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시설 주체가 현재 대구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아니 자료상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단 말입니다, 관리 주체를. 그렇다면 거기 동대구역광장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게 관리 주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또 자기 돈으로, 국가에서 돈 댔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구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것은 정말로 다투기 위해서 다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사당역에서……

국민은행 뒷길 도로명 별칭이 뭔지 장관님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잘 모릅니다.

○**윤재옥 위원** ‘김대중평화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2022년에 별칭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도로 관리 주체가, 영등포구청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름 정하고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정말 이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성명 정도는 발표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민생 관련해서 얼마나 현안이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자리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장관님께서……

2분 쓰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하세요.

○**윤재옥 위원** 장관님께서 돌아가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더 이상 이런저런 이야기 안 나오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그리고 코레일 사장님 보스턴컨설팅을 받았나요, 철도 안전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윤재옥 위원** 누가 받았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받은……

○**윤재옥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받았나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보스턴그룹 컨설팅 받은 거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안 받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보스턴컨설팅 받은 바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토부에서 받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여기 관계의 독립성 부재, 시설관리 과편화, 인력 위주 업무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부처 차원에서 어떤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아직까지 액션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조율 과정에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코레일하고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수립하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8월 18일 날 철도 탈선과 관련된 사고 있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제가 사실 그날 상경하려고 울산역에 갔는데 사고가 나서 그날 귀경을 못 하고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그다음 날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탈선 사고 날 수 있지요. 비행기도 결항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는

계속 방송만 하고……

매뉴얼이 있나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는 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SOP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런데 그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요.

○윤재옥 위원 그래서 부산역에서도 많은 승객들이 광장에서 불편을 겪었고 불만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되겠다, 사고 나서 고장 수리하는 건 수리하는 대로 하고 승객들 불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세워져야 되겠다, 방송만 하고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5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옥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고요 권영진 간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장관님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쟁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 여러분들이 머뭇머뭇거리거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지금 야당 의견하고 여당 의견이 관점이 다르고 또 보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조금 아쉬운 거는 앞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서 명확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파악됐을 때 법률 자문을 거쳐서 오늘 와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와 가지고 양쪽 얘기를, 문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지금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앞으로 이거는 점점 더 커질 갈등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표지석도 설치했고 거기에다가 동상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그래서 국토부하고 특히 철도공단 이사장은 오늘 이 보고서를 보시면,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장이 보고할 때 의견을 표명했던 이유 중의 하나인데 이게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내일 말고 다음에 전체회의가 열릴 때는 국토부가 법률적인 검토를 좀 받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구역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역명을 갖고 있는 지자체마다 다 확산될 개연성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국토부가 하고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나중에 그 시설을 이관받아야 될 기관으로서 입장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거기 바탕으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광주 북구갑 정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광주송정역 KTX역 옆에 1년 지난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관리하는 송정역 주차장이 있는데 어제오늘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누수하고 균열이 심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해서 조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월 8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 받으셨는데요. 일주일 전 언론보도 기준으로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는 협의를 하고 경기도 환경부 농림식품부하고는 협의가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라기보다는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발표할 때 서울시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사실은 서울의 그린벨트가 될지 경기도의 그린벨트가 될지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경기도지사님까지 그 논의에 참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주로 서울시 내의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는 실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제 차관급 실무체도 발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환경부하고는 왜 협의 안 하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나중에 그린벨트를 진짜로 해제할 단계가 되면, 그게 어느 그린벨트가 될지 모르지만 행정구역이 경기도면 경기도 또 환경부 농림부 이런 기관들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정준호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가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경기도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모르는데 협의 과정은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경기도하고는 안 하고 그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협의 과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지구 지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개발법에 따라서 지구 지정 단계에 가면 당연히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장님이 발표할 때 오신 것은 그것을 전제로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울시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 노력한다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정준호 위원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도 맥락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하는 페포먼스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자회견장에 대동하고 배석한 것 자체가 이것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글쎄요, 김동연 지사님이나 인천시장님까지 참석하셨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교통 관련 발표를 하거나 할 때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이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협의도 안 해 췄는데 당연히 그날 자리에 배석할 이유가 없겠지요. 제가 지사여도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쿠팡 생활물류법 관련된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하셨는데 표준계약서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준호 위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표준계약서에 보면 3조에 위탁지역하고 위탁업무를 특정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금 돼 있고 오른쪽의 쿠팡이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계약서 3조에 보면 '위탁의 범위'라 그래 가지고 위탁지역이나 위탁업무를 고정하지 않는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계약서가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준호 위원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번 상임위 준비 과정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자체는 국토부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리 실무진들은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국토부에서 제출을 받았느냐, 저희가 규정을 살펴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이 계약서는 택배사업자가 등록을 할 때 국토부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인지를 하셨는지 아니면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진상 파악하시면서 인지를 하시게 된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차관이 답변 좀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왜냐하면 지금 위탁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희가 생활물류법 규정을 보니까 계약 해지와 관련해 가지고 6년 이하의 기간일 때에는 임대차 자동 갱신되는 것처럼 갱신청구권이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는데 쿠팡에서는 이 부속합의서를 쓰면서 즉시 해지 사유를 이렇게 작성해 놨어요. 그러면서 계약서에 지금 이 조항을 넣

지 않고 부속합의서라는 형식으로 이것을 잠탈해 가지고 별도 합의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숨겨 놨습니다.

이 부속합의서는 국토교통부에 지금 제출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제출 안 돼 있으면, 쿠팡에서 이것 이렇게 잠탈해 가지고 탈법행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폐널티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앞으로 부속합의서에 위탁구역이 포함돼 있는 내용을 본 계약서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장조사까지 나가셔야 이 부분들이 파악되는 그런 구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현장조사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쿠팡에 현장조사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지금 고지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뭐……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도 수시로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독은 하고 계신데 이 부속합의서 관련된 내용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저도 이번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 나갈 때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쿠팡은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는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저는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부분들, 부속합의서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잠탈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적발하셔 가지고 그에 관련된 조치를, 꼭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과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8·8 부동산 대책 중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방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정부가 내놓은 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결국은 수도권·서울 지역에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도권에서의 공급 확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방은 정반대 상황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점식 위원** 지난 8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12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도 39주째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점식 위원** 저희 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7월 22일 보합에서 7월 29일 하락으로 바뀐 뒤에 8월 5일 -0.02, 8월 12일 -0.03%로 3주 연속 하락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지방의 수요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방의 수요 촉진 방안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만 추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9월 중에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한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걸 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 시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안부하고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아마 국회 행안위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그게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찌 됐든 야당 위원님들 잘 설득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수요 촉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쌓이는 이유는 결국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수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하는 수요라든지 현 집에서 새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수요만 있을 뿐이고 그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자연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대체로 추정하고 있고,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점식 위원** 그래서 지금 미분양 해소만으로는 이런 메리트를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결국은 수요 촉진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께서도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 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과 연계가 된다 SOC 투자를 통해서 소위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그게 결국은 주택의 수요 촉진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소위 일자리 확대 정책, 수요 촉진, SOC 투자를 통한 지방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동의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동의를 하고 있고 이미 전 정부적으로 그런 대책을 각 부처마다 잘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부에 대한, SOC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별로

도심에 도심용합특구라든지 또는 기회특구라든지 하는, 창업을 하거나 수도권에서 공장이나 기업이 이전해 올 때 혜택을 주는 그런 지역들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방의 부동산 수요 촉진 대책이다 생각을 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역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 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마련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2분 더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예.

○정점식 위원 SOC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어제 국내 1·2위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와 기아차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100% 완전 충전해도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점식 위원 이게 결국은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 충전율의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렇게 현대·기아차에서 한 것 같은데.

다만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8월 8일 날 해수부에서 카페리 그러니까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선박, 카페리라 하기도 하고 차도선이라고도 하는데 카페리에 충전율 50% 이하만 선박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발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죄송합니다. 그건 처음 듣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아예 선박에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고, 실제로 저희 지역구인 통영에서도 옥지도를 운행하는 차도선에 전기차 탑승을 금지시켰다가 다시 50% 충전율 확인하고 진입을하도록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로부터 전혀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없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권고지침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이소영 위원님도 같은 뜻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근거 없는 공포의 확산, 이 역시 굉장히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상시적으로 수시로 점검, 우리 몸도 건강점진받듯이 점검을 받는다든지, 또 BMS라고 있습니다.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게 아니랍니다. 뭔가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데, BMS라는 걸 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소유자나 또는 제조사에 연락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고 일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더 실효적이지 출입금지 이런 것은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배도 걱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아까 지적했지만 아파트 짓는 것 전부 다 지금 지하로 주차장 넣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포가 퍼져 나가면 정말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국민들 주거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엄청난 과도한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준호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 7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렸어요, 대통령 관저 관련해 가지고 증축공사를 한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해서 그때 장관님께서 건설업 면허는 국토부가 담당을 하니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서 최대한 자료 작성해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결국 발주자가 확인해 줘야 되니까 못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게 이제……

○**한준호 위원** 안 주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있는 걸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한준호 위원** 자료가 왜 없습니까? 이것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키스콘(KISCON) 여기 통해 가지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공사대장 같은 것들은 다 자료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게 그 해당 건설……

○**한준호 위원** 이것 없어요? 이것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이 업체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요. 해당 시설물이 국가안전보장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 지금 21그램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질의한 이후에 나온 같이 건설 증축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회사가 제주도에 있는 모 종합건설회사라는 데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희가 찾아봤어요. 저희도 찾아요. 찾아봤더니 이 회사 직원 수 6명입니다. 예?

이런 회사가 말씀대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있는 공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축을 한 내용을 보니까 14평짜리를 일주일 만에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1그램이라는 데가 건설사 종합건설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 즉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나,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종합건설 대표가 뭐라고 언론보도에서 말을 하냐면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했냐라고 했더니 긴급공사여서 우리가 착공일보다 조금 일찍 가서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건데 소관 부처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건설공사대장 정보로는 공사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건축물대장과 관련해서는……

○**한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만일에 이 건설사 종합건설의 대표의 이야기대로 긴급공사여서 본인들이 착공처리일보다 조금 일찍 가서 했다, 이것 건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법 111조 1호에 따라서 착공처리일 이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 건축법 위반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일주일 만에 공사를 했다고 하는 21그램 여기가 진짜 본인들이 일주일 만에 건설하면서 만일에 명의를 도용했다면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고,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파악 안 하십니까? 이런 회사가 와 가지고 건설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오히려 국가안전보장이 훨씬 더 위해가 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발주청이 행정안전부기 때문에……

○**한준호 위원** 아니, 그 발주처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두 가지 국토부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냐는 물음과 또 하나는 말씀대로 건설공사대장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조차도 제출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왜 안 주세요?

장관님, 만일에 계속 이렇게 자료 안 주시면 저 이것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상임위 의결받아 가지고 요청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 시간 마저 주십시오.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한준호 위원** 이것 제가 만일 이렇게 상임위 의결을 받아 가지고 자료 요청해서 안 주시면 증감법 위반이 됩니다. 예? 이렇게 꼭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해야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일관되게 그 발주청인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는데……

○**한준호 위원**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라는 데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가안전보장시설이니까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행안부의 입장인데, 국토부가 이걸 똑같이 반복을 하고 계시면 국토부가 무슨 행안부의 하위부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행안부가 시키면 이것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베티시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관련된 법률 위반 사안이 명백하게 보이고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긴급 공사여 가지고 착공처리일보다 먼저 가 가지고 공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것은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찾아보니까 이 건 설업체, 6명이 가서 일하는 회사라니까요? 증축된 것이 불법적으로 증축이 됐을 가능성과 두 번째는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시설에 대해서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사 직원이 지금 7명이라고 하셨지만……

○**한준호 위원** 6명이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6명,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원들은 얼마든지 또 더 고용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한준호 위원** 상식적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서울에 수두룩한 종합건설회사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제주도에 있는 회사를, 이것도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오고 가면서 비행기값이며 이런 것들이 더 들 텐데 왜 여기다 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발주기관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사유가……

○**한준호 위원** 최대한 받아 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최대한 받아 가지고 주시고요. 만일 자료를 계속 이렇게 안 주시면 제가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 요청해서 이것 제가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국토부의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건 인지를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끊고.

이건 약간 의사진행발언성인데 관련한 자료 이렇게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저희 상임위 내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해 주시길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면 드릴 텐데 사실은 확보하기가 곤란한 어려운……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러면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시면 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맹성규** 그 자료가 안 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동대구역광장 내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한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입장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오늘 업무현황 자료에도 나와 있고 아까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답변했듯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은 준공 전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고 대구시에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 처리를 한 후 이관할 때 그때 따져 보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김기표 위원**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기표 위원** 박정희는 김삿갓이나 의림지 이런 것과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이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대구시가 한 건지……

○**김기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지를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기표 위원** 예,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하지요.

김삿갓이나 의림지하고 박정희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설사 정치적으로 무관한, 예를 들어서 그 광장 이름을 ‘애국광장’이다 ‘민족광장’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게다가 그런 이름도 아니고 아직 평가에 있어서 분명하게 의견이 갈리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그 평가에 박한 것 아닌가 하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또 김대중컨벤션센터니 무슨 동 이름 얘기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르지요. 그건 예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것과 지금 이 건을 그대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도 가능하니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국회에서까지 끌어와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아니고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것이고 그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주무부서에서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대구에서 역명 변경이라든지 표지석 설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구에서 저희한테 역명 변경 신청이나 표지석 설치를 위한

허가 신청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자체적으로……

○**김기표 위원**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표지석을 설치하고 그렇게 한 것은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건 팩트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권한 없는 행위를 자기들이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인지를 따져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8월 13일 날 표지판이 설치가 됐고 14일 날 제막식까지 한 사안입니다. 주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오늘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 법적으로 검토조차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주무부장관이 이것 보고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다는 그 답변이 과연 적당한 답변입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보고서에 써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저 스스로도 의문이 생겨서 그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다 전문적인 기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은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다가, 처음에 입장이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가 다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름 바뀌기 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대구광역시하고 맺은 협약서에 보면 11조에서 ‘대구시가 하는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시설물과 토지 등 재산은 갑, 그러니까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하고 추후 이 갑의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14조에 ‘기타 사항’으로 해서 ‘갑과 을은 설계 및 공사 시행 등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준공 이후에는 그것을 철거할 수도 있고 다시 재논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안, 즉 이 표지가 명백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르면 당연히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은 그것 자체도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보고서에 그렇게 써서 준공할 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아까 공단 이사장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서 정확한 좀 더 권위 있는 또는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표 위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바탕이 다르니 다시 검토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장관이 이것도 검토를 안 했다면 말이 안 되고 이런 협약서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할 것 없이 명확하게, 대구시에서 무리하게 한 행위를 가지고 답변마저도 부정확하게 얼버무리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대체 이 동대구역광장 내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보고서 어디서 썼습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썼습니까?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동대구역광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 놓고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칭을 정하여 부르는 것도 가능하며’, 이게 지금 잘했다고 하는 취지의 뉴앙스의 보고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별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별칭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구시가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서에서 얘기한 별칭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너무나 인정할 수 없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막식까지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별칭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워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의문이 들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 국토부에서 작성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공단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작성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국토부에서 작성, 내용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토부 보고서입니다. 국토부 보고서이고……

○**김기표 위원** 앞으로 그러면 건물 같은 거 그 앞에 다 지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하면 그것도 별칭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 법적 권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따져 보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기표 위원**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의 명칭을 썼다면 국토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인 조치, 집행정지 같은 것을 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보고서에서는 별칭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철도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동대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시는데요.

공단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선로변 완충녹지라든지 역광장 조성하는 걸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지금 철도사업 관련해서 지자체가 한 곳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하고 대전 도심주변 정비사업이 처음입니다. 그 이외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처음이지요. 이게 처음에 경부선 고속화하는 과정에서 동대구역을 지하화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서 지상화하면서 이렇게 대구시가 선로변 완충녹지하고 역광장 조성사업을 하게 됐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산이 3237억이 들었는데 이 예산은 재원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국고입니다.

○**김도읍 위원** 국고이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김도읍 위원** 공단 예산 아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구시는 대구시가 조성 공사를 하였고 국고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충녹지뿐만 아니라 역광장 소유권까지 다 넘겨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공단이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 11조에 보면 ‘사업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설물, 발생하는 시설물은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 대구시와 공단 간의 소유권 분쟁이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토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철도공단을 상대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왜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설득론 면이 있겠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다루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원국 차관님, 오늘 장관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을 받은 바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결과를 가지고 안전체계 개선방안도 발표를 했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태생적으로 우리 과거 철도청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는 철도공단이, 운영은 철도공사 코레일이 하도록 분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관제·유지보수가 운행과 관련이 있다 이래 가지고 철도공사에 남겨 놓고 결국은 철도사고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지금 관제·유지보수가 이원화되거나 일치되지 않거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잦다 이런 진단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결론도 관제·유지보수권을 공단으로 이전하라 이게 결론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장기적으로는 그런 데요.

○**김도읍 위원** 아니, 결론은 그런데 이렇게 이관을 하려고 하면 당장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조직 혁신이라든지 안전관리를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이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 진단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관제·유지보수권을 공단으로 넘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 차관님께서 발표하신 이 개선방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그러면 철도사고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되느냐.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보스턴컨설팅에서 나온 얘기는 관제를 집중화하고 또 독립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한 곳이 유지보수하는 게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맞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만 이게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안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대로 코레일에서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지표를 세워서 그 지표에 미달했을 때는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레일 내부적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쇄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렇게 시설 자체 따로 유지보수 자체 따로 하는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대체적으로는 같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유지보수를.

○**김도읍 위원** 그게 맞지요? 그게 맞고 그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나 시설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분리돼 있고 하기 때문에 철도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 진단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단이고 궁극적으로는 차관님 계실 때 힘드시지만 이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전지표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조직혁신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레일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이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차관님께서도 명확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나.

왜냐? 관제나 유지보수권이 공단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순리인데 원칙과 순리를 어겨 가면서 지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잦다. 결국 궁극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 그런데 무리가 있으니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관님께는 대체적으로 실무적인 질문을 마치고.

장관님, 사실 이런 문제가 제 소견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컨설팅 결과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컨설팅이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액션 프로그램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쪽으로 차츰차츰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도읍 위원** 아픔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홍철 위원** 오늘 장관님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8·8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선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7년까지 공급이 핵심인데 신속한 공급에 어긋나고 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사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 **민홍철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7년 후에 공급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현 가능성성이 높지 않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부족해요, 이게. 왜냐하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이것도 연기해 버렸지요. 그다음에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공급대책,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고요. 지방은 대책이 없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다음에 어찌 보면 입법과제가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입법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LH에게도, 아까 공공임대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LH에게도 재정적·인력적 한계를 넘어서는 과중한 부담을 지금 안겨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LH의 경영 악화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하고도, 이게 먼저 선조치를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이게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한데, 현재 디딤돌대출 그 다음에 버팀목대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 **민홍철 위원** 주로 일반 또는 신혼·청년들에게 주는데 국토부의 신뢰가 어긋났단 말이에요. 7월 언제입니까, 28일 날에는 디딤돌대출 금리 조정방안이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 8월 11일 날 바로 발표를 했어요, 0.2 내지 0.4% 인상하는. 그래 가지고 8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신뢰성이 없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금도 대폭 상승하고 있거든요. 청년·신혼 대책이 없어요. 또 주택담보대출이 시중금리보다도 오히려 더 역전이 돼 버려요. 그러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금융상품을 어떻게 신혼이나 청년, 일반이 믿고 이렇게 전세나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이런 대책들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선을 얻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또는 부동산 대책이 자꾸 지금 겉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작동을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제가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더 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LH도 한번 보시지요.

현재 LH 매입임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매입임대를 하면 할수록 LH는 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 단가를 좀 높여 줄 필요가 있어요. 정부 지원 단가는 현실적으로 현실 지원율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못 하겠는데요. LH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낮은 정부 지원 단가 그다음에 신축 위주 매입정책 방향에 따라서 실매입비가 상승하고 있고요. 추가부담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이 위축됩니다. LH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분만 좀……

○**위원장 맹성규** 예, 쓰세요.

○**민홍철 위원**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보고가 아니라 대책 수립 과정에서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 냅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를 하고 LH와 협업을 해서 공공임대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LH가 지금 법정자본금이 40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LH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50조입니다.

○**민홍철 위원** 그 50조도 지금 턱없이, 잡식될 가능성은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그게 법정자본금 자체를 확대시켜야 될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을 건데, 이렇게 LH에게 부담만 주고 정부는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또 박하게 평가를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주고 뺄 때리고 얼마나, 물론 LH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과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출구를 열어 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동산 대책 특히 주택 대책이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현장의 현상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셔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집값도 잡을 수 있고요 전세가도 잡을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사항들 저희가 다 이미 인지하고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청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H 매입임대에 대한 지원 단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요.

그리고 LH가 일이 많아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는 1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4% 정도밖에 안 돼요, 지원 비율이. 전체 실제 단가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하여튼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서도 지금 예산 당국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 문제뿐만 아니고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감이, 일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미 인력도 한 100명 정도 증원을, 작년에 LH를 약간 벌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가시지도 않았지만 올해 100명의 증원도 했고 경영평가도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가 나왔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감을 맡기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될 것이 뭔지를 LH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애로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8·8 대책을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8·8 대책은 무엇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정부 차원의 조치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은혜 위원** 서울 아파트는 올해와 내년의 입주 물량, 그래도 아직은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데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공급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게요.

지난 7월에도 정부 추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말씀이 맞다면 공급은 충분한데 왜 집값은 오를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파트 부분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위원** 사실 저금리나 과잉 유동성을 장관님은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지요, 어차피 기재부 총괄로 하게 되니까.

다만 저는 이걸 짚어 보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장관님이 말씀하신 만큼 지난 2년의 물량을 보면 3만 4000, 2만 7000,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그리고 26년 27년도 걱정되고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당장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실제는 부족한데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만

하면 국민이 믿을까요?

장관님,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대책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매년 적정 신규 주택 수요를 서울에서 몇만 호로 잡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7만 호 정도가 서울시 내의 대책이라고 보고요. 아파트의 입주 물량에 있어서는 24년 25년의 경우가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6년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단할 수가 없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저는 지금 수요를 여쭤봤는데요. 수요 예측을 하신 거예요? 공급 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인 거라서 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나오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라는 건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투자 수요도 발생하기 때문에……

○**김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 예측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장관님,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점검을 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점검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래요? 몇 퍼센트나 달성이 됐습니까? 심지어 전 정부에서 공급쇼크 수준이라고까지 해서 단순 집계만 하면 100만 호, 200만 호에 육박합니다. 물론 아까 로드맵은 로드맵뿐이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는 공급확대 방안이 제시됐고요.

얼마나 달성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시한 만큼의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저는 수요 예측과 함께 공급에 대한 장관님의 실적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국민들께 제대로 된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토부에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거는 묻지 마세요인지, 그때 국토부는 틀리고 지금 국토부는 맞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의아했는데요.

장관님, 이게 실적 점검이 안 되고 수요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주택들 다 어디로 갔는지, 실제로 지어졌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공급 능력을 부풀려야 되니까요. 지금 뒤에 많은 분들 앓아 계시지만 산하기관 마른 수건 쥐어짜서 실적 또 숫자 발표해야 하고, 그리고 발표만큼 공급이 안 되면 국민들 사이에 불안의 요소가 되고,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치가 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저금리 과잉 유동성이 겹칩니다.

저는 수요를 알아야 주택이 많다 적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지 수요를 모르시는데 공급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근거 없는 희망보다는 근거가 있는 사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장관님. 우리가 보통 한강수계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예.

○김은혜 위원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에 매년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을 계속 공급을 하는 것처럼 국토부가 지금 할 일은 집값이 급등했다고 놀라 가지고 있는 카드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급 능력이 객관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매년 우리가 지어 줄 수 있는 공급 능력이 얼마 정도다라고 차분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게 맞지 여기서 적정 수요, 만약에 실적 점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서 도와드릴게요, 전문가와 함께.

저는 이제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을 세우실 때 스텐스를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집, 얼마나 청년들이 억울하면 ‘나는 죽어도 새집 살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저희 의원실과 함께 실적 점검과 적정 수요 조사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단지 아까 공급 실적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수요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요라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전망하기보다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 몇 년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량이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다면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정도의 추정을 하지, 그게 내년에는 인구가 어떻고 경제성장률이 얼마일 것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몇 호가 될 것이다라는 식의 추정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거 5년 또 짧게는 3년 또 과거 한 10년 간의 서울이면 서울 또 경기도면 경기도의 주택 거래량을 보고 그게 평상시의 주택에 대한 수요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로직을 가지고 정책 수립할 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매년 적정 수요라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앞으로도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따 추후 질문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대전 중구 박용갑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수도권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춘석 위원님이나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발표보다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용갑 위원** 대학도 35% 또 대학생도 41%가 수도권에 다 밀집이 돼 있어요. 인구는 줄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 가는데 수도권은 늘어요. 지방 인구는 이제 50%가 안 됩니다. 한 49.6%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수도권이 계속 밀집함으로써 지방 소멸 시대가 점점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청년들이 왜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을 몇십만 호 늘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하고 또 대학도 지방에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늘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더 지어서 그런 벨트까지 풀어서 아파트 짓고 점점 수도권은 과밀해지고 또 지방은 소멸되고 이렇게 돼 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부산에서 대학교 다닌 친구들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 그 친구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8·8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을 국무회의 할 때 건의도 하시고 해서 작지만 10개라도 20개라도 지방에 분산을 해서 공공기관과 또는 대기업과 젊은이들이 같이 내려와서 지방이 활성화돼야,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2000호, 다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게 1만 2000호입니다.

○**박용갑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에 미분양이 지금 한 5만 8986호가 있어요. 거기에 악성 미분양이 1만 1965가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이 1만 2000호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 정도 있는데 지금 CR리츠로 해서 5000가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약 1조 정도 들여서. 그런데 리츠도 마찬가지지요. 그분들은 목적이 뭐니까? 물론 사회 공헌한다는 것도 있지만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악성 미분양은 거들떠보지 않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한 5000호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5000호 정도. 그러니까 약 5만 8000호 정도 되는데 5000호 정도, 그것도 사실 우수 미분양만 리츠가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장관님 국무회의 할 때 국토위에서 8·8 대책 이런 논의가 됐는데 이건 수도권 위주의 대책이고 지방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지방의 대책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 등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런 정책이 더 근본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도 지방에서 정착하고 일자리 만들고 거기서 살고 그래야 지방 소멸이 되지

않고 국가 국토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정부가 저희 소관만 해도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이라든지 또 대전 같은 데 도심융합특구를 한다든지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박용갑 위원**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지방의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인 겁니다.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일자리가 아니면 한시적인 일자리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일자리는 사실 지방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지금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영상 한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저 영상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무더위가 진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용갑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사실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분들은 뜨거운 선풍기 하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LH 사장님 계시지요?

현재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지금 영구임대 설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상 단지가 전체적으로 126개 단지에 14만 호 정도 되는데 현재 24년부터 28년까지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7만 8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호당 들어가는 에어컨 설치 비용이 40만 원인데 정부가 50% 저희 LH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호당 50만 원으로 인상해 주시고 국고 비율을 60 대 40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해 놓은 상태고.

어떻든 영구임대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입주민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형편상 28년까지 약 7만 80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용갑 위원** 이 무더위에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어떤 분들은 뜨거운 선풍기 앞에서, 저렇게 어려운 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보면 거의 연세가 높거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더위에 진짜 폭염에 고통받지 않도록 좀 당겨서, 28년이 아니라 좀 당겨서 에어컨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8900세대, 26년부터는 1만 7000세대 정도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힘을 합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폭염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LH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이것저것 다 어려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국무회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질의한 것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변압기 용량을 확장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사장님은 개별 가구당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개별 가구당 에어컨 지원이 되면 그 비용 안에 변압기 증설 비용도 들어가는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변압기 증설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체 37개 단지 중에서 36개 단지는 부하율 78% 이하로 증설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에어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면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저 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압기 용량 증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맹성규**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기사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현재 37개 단지 중에서 36개는 이미 변압기 설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개 단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변압기 설치 문제는 마무리될 거다.

○**위원장 맹성규**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에어컨 설치된 것을 틀고 싶어도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틀 수 없다는 기사였는데 지금 사장님 답변은 웬만한 단지는 다 변압기가 증설이 됐고 다만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살 돈이 없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게 맞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 비용만 확충이 된다면 변압기와 관계없이 입주자들이 편안하게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가 과부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저 기사에는 15㎾ 이상 돼야 되는데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가전제품을 틀고 하면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 증설은 물론이고 에어컨까지 설치하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는 15㎾ 이하 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많이 완성했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입주자분들께서 에어컨 설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대규모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부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 지금 LH 사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고 지원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잖아요. 한번 챙겨 보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국회하고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 양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필요하면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권영진 간사님.

○**권영진 위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동대구역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장관님 답변도 오락가락하시고 그다음에 공단 이사장님 답변도 부정확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 사업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사업으로 원래 시작된 건 아니지요? 2007년도에 시작할 때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권영진 위원** 그러다가 그때 한국철도공단하고 대구시가 협약을 맺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권영진 위원** 그 협약 속에는 그때는 이 공사로 새로 생긴 시설물들 중에 도로는 대구시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철도공단으로 된다고 돼 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광장 공사가 아니었잖아요? 광장 공사가 시작되는 사업은 2013년도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사업으로 광장이 확장되는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2009년도부터 광장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 실시계획 변경이 이뤄지게 됩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때부터 광장에 대한 공사가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진 위원** 그래서 2017년 10월 달에 이 공사 다 마쳤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아직도 준공허가 못 내고 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준공을 못 내는 이유는 대구시와 한국철도공단이 이 시설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구역 앞에 새로 생긴 광장, 옛날 구광장 조그마한 것 말고 이것은 지금 어디 소유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확장 공사를 하기 전에는 동대구역 앞에 조그마한 광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양쪽으로 1광장 2광장이 있고요. 1광장 2광장은 지자체 양여대상인 대체시설로 고시되어 있지 않고, 2016년에 고시된 시설은 폭 48m의 과거 동대구역 고가교를 대체하는 시설 이것만이 양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것은 국가철도공단의 얘기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2017년 10월 달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2016년 9월 7일 날 철도공단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 향후 시설물, 무빙워크, 광장을 포함한 조경시설, 주차장 등 이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받으셨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권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2016년 9월 12일 철도시설공단이 대구시로 보냅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의 도로와 관련 후속 정비, 전기시설 및 향후 설치되는 무빙워크, 광장이 포함돼 있는 조경시설, 주차장 관련 설비 등은 시공 주체인 귀시에서 유지관리와 운영을 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권영진 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 우리 소유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소유권까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공단 이사장님은 지금 철도공단으로 귀속됐다라는 국유재산이라고 하지만 대구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철도공단이 관리하나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대구시가 하잖아요? 대구시가 이 관리비 얼마 투입했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에 대해……

○권영진 위원 모르시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권영진 위원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요?

117억을 투입했어요, 이것 관리하는 데.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것은 이 소유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한국철도공단이 서로 이견이 있는 겁니다. 하부에 있는 철도 땅은 한국철도공단 것 분명해요. 그러나 대구시가 쓰던 도로를 광장으로 상당 부분 편입시킨 상부에 떼 있는 고가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광장과 주차장도 대구시 거고 대구시 거니까 그동안 7~8년 동안 대구시가 117억을 들여서 관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기관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까 봐 내가 뭐라고 강요는 못 하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소유권 문제를 협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만 위탁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이 관리와 운영을 대구시로 맡겨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공사 완료와 함께 철도건설법상 준공 조치가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유권에 대한 의견으로……

○**권영진 위원** 아니, 잠깐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지금 7년 동안 안 되고 있어서 건설……

○**권영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잠깐만, 관리·운영을 대구시에 안 맡겼다고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것은 시공 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 중 자산이기 때문에 건설 주체가……

○**권영진 위원** 아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권영진 위원** 새로 생긴 도로 주차장 확장된 광장의 관리와 운영을 대구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분명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진 위원**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그것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당시 문서로는 ‘유지관리는 대구시가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아니, 2016년 9월 12일 날 이렇게 보냈잖아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이 공문에 따라서 대구시는 유지관리비로 지난 8년 동안 117억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당시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설을 담당하는 주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권영진 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준공 안 된 건 안다고. 준공이 됐든 안 됐든 광장을 포함한 시설물들은 2016년 9월 12일 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문에 의해서 대구시에 관리 그리고 유지 맡겼잖아요? 그리고 대구시는 그때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7억을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맞냐 안 맞냐고 묻는 건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맞잖아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권영진 위원** 준공이 안 된 것은 지금 소유권과 관련해서 철도공단과 대구시가 이견

이 있어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들은 대구시하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지 마시고 잘 협의해서 소유권 문제도 잘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가지고 가려면 유지관리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세요. 왜 자기 소유 땅을 대구시에 맡겨서 해요?

조금 더 하게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1분 주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유지관리를 철도공단이 할지 또는 대구시가 할지, 또 다른 주체가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권영진 위원 그게 자기 소유 땅이면 기본적으로 자기 땅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돈 들이는 게 맞지요. 대구시 입장에서는 내 땅도 아닌데 유지관리만 네 비용 들여서 하라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준공 전이니까 유지관리 권한과 의무는 대구시에 있는 건 맞잖아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한국철도공단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의무도 아니듯이.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시설물들이, 이번에 박정희광장 표지판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그동안 했던 여러 시설들이 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제가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세계 세 번째로 기후시계도 설치하고 조형물도 드나드는 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어요. 그때 한국철도공단이나 어디에서도 이것 왜 설치하냐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시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표지석만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면에서 공단하고 대구시가 지금 소유 문제 빨리 해결하시고 또 준공도 완료하시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소유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가지고 가시면 그러면 유지관리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돈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소유권을 대구시로 넘기세요. 지금 철도법에는 광장 교량 이런 시설물들 지자체로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양시설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대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광장은 철도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양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영진 위원 법 잘 보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철도시설은 대체시설에서 제외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법과 시행령을 잘 보세요. 철도법과 관련 시행령에 광장도 다 들어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광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지금 보셨잖아요. 이 문제가 정쟁이 되거나 이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지금 권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대구시하고 시설공단의 소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 소유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권영진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계하고 이게 왜 다르냐 하면 표지석에다가, 광장 이름·명칭 변경을 전제로 한 표지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만일에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권리다 넘겨 왔을 때 어느 시설은 갖고 오고 어느 시설은 철거하고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전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게 당연히 관련되는 데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관련되는 데서 입 딱 다물고 전혀 모르쇠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시간은 내일은 너무 급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내일 외에 다음에 가장 빨리 열리는 우리 전체회의 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간사님.

○**문진석 위원** 장관님,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6년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가장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원래 이게 좀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폭등을 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이 인용하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마는 8·8 부동산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공급 확대 정책이고요.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상당한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문진석 위원** 시장에서 뭔가 실효적인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진 않았겠지요.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게 반응이, 또 모든 국민들이 중계방송 쳐다보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진석 위원**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데 상승률 통계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작성을 하고 해서 약간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문진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한 어떤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8 공급 대책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결국은 과거 정부도 그랬어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 대책도 보면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어떤 선언적 대책들이 좀 많아요. 뭔가 이제는 아파트가 실제로 공급이 되겠다 주택이 공

급이 되겠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먼 훗날, 특히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이것 10년 후에나 집이 들어오지 공급이 되지 당장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단기·중기·장기 대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니 정부가 선언적으로 뭔가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게 언론이라든가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공급 대책보다는 자꾸 옛날에 했던 대책들을 다시 반복해서 섞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시장은 금방 아는 거예요. 시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장은 ‘아, 이게 공급이 안 되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자꾸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시장에서 ‘진짜로 공급이 되는구나’ 이런 대책들을 발표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실패를 반복할 소지가 많다, 8·8 대책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

사실은 연초에도, 2024년까지 100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그것도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솔직히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못된 공급 대책 과하게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훨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물타기하려고 하거나 뭔가 임시방편으로 때우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간다 이런, 우리가 과거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실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거를 공급하는 데 실질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도심에 공간이 확보돼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생숙 아시잖아요, 장관님. 생숙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지금 마곡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200억 정도를 공공에 기여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장관님도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생숙이 우리 수도권에만 몇만 채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2만 호 정도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2만 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문진석 위원** 전국에 한 16만 세대인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문진석 위원** 저도 잠깐 시간……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문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획보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은 먼 훗날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주어진 지어진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거공간으로 다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이고도 또 금방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바로 주거로 전환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주택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은 과거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따져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면을 굉장히 조심해서 유의해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또 듣고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따져서 실천이 되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생숙 대책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방금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것 같은 그런 방식의 해법도 있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해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것 언제쯤 발표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건 발표라기보다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무슨 대책처럼 발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안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한테도 또 말씀드리고……

○**문진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지요, 이 공개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될 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이 성숙이 되지 않았는데 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가 그렇게 몰고 가더라라고 이렇게 내일 신문에 나면 잘못하면 또 오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대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1분만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예, 하세요.

○**문진석 위원** BMS라고 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문진석 위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이라는 건데 지금 전기차 포비아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국토부 대응이라든가 서울시 대응을 보면 오히려 이게 역행하기, 잘못하면 전기차가 시장에서 확산되는 게 방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서툴러요.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옮겨라 이런 대책들은 사실은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더 증가시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BMS를 아신다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BMS에 대한 대책, 이것을 활용한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대책을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지금 현재 혁신하는 기술력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BMS를 활성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BMS에 가입을 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받는 그게 가장 유효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쪽으로 아마 지금 범부처 대책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진석 위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BMS를 활용하면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동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배터리를 90%만 충전하게 한다 이것 다 잘못된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실상은 전기차 배터리가 95%밖에 충전이 안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루 종일 충전을 시켜도 95%가 넘으면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방침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차 확산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대책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많이 준비해 오셔서 1차 질의하실 때 대부분 다 7분을 사용하셨고요.

손명수 위원님하고 복기왕 위원님, 그다음에 안태준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의 추가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분 쓰시고요. 김은혜 위원님은 2분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명수 위원** 장관님,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전기차 문제는 사실 문진석 위원님의 다 하셔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

지나치게 전기차 화재가 포비아로 가고 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동의하시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제 대세이고 세계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안전기술 고도화를 포함해서 이걸 더 발전시켜서 대응을 해야지 이걸 지하에 주차하지 마라 충전율을 낮춰라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이거를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 기사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나 아파트 단지에서 즉각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주차 못 하게. 그거는 맞는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서 전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기쁜 일이고,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 구제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앞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피해자 구제를 해 봐야 그 외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자로 규정된 피해자 외에 HUG 반환 보증금 미회수 사고 건수가 올해만 7조로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법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더 큰 규모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시급하게 피해자 예방 대책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두 가지 사항 전부 다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 견해에 100% 동의를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사기 피해자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도 정말 적지 않은 엄청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크고 작은 잡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잘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 대한 불안정성,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제도 또 거래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복기왕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 동대구역광장에 있는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역 시설들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지자체와의 관계도 동일

한 기준으로, 특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저희가 사실 일본 사람 아니면 그리고 친일파 아니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일본 징용공 동상이라든지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이동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할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대로 일을 해 나가시면 혼란스러울 것이 없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빨리 그런 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요. ‘우리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책이라면 전국을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대책이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방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저도 한 말씀 거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약 한 4만 가구 정도 공급량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번에 한 8만 가구 정도 그린벨트를 푸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서울로의 집중 집중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결국 4만 가구 정도의 로또가 터지는, 이것을 또 8만 가구의 로또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결국 서울로 서울로 이런 역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국토부에서 면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죽 보니까 장기 주거종합계획이 10년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 초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장관님께서도 ‘올 초까지는 내놓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해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답을 내놔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답을 저에게 답변으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다음번 상임위 때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하고.

하나만 더 드리면, 주택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EWS 있지요? 이게 보니까 칠팔월 모두가 다 최정상이에요, S1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기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여쭐 테니까 시스템에서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달리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좀 내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 위원님.

○안태준 위원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인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17만 6000호 정도 중에 멀실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9년 까지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만큼의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동산 대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착공이나 준공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물량이 안 늘어난 상태에서 멀실주택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명확히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 8·8 대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하시면서 보니까, 사실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공급이라고 할 때 그냥 주택건설 승인만으로 공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숫자 놀음을 하기 참 좋은 게 승인 문제인데 이번에는 착공, 그러니까 기존에 승인이 나 있는데 착공이 안 됐거나 정비사업으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배치했다는 점에서 아, 정부도 착공 물량이 좀 있어야 확실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데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아까도 계속 우려스럽다는 점이 있었는데, 저도 그린벨트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차관님께서도 6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서울이 아닐 수 있다 확정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미 관계기관 합동회의 때 시장께서 발표하신 바도 있고, 그다음에 합동회의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시 내 그린벨트 전체 150km²를 토지 거래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고, 서울시장께서도 발표하실 때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을 상당히 공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풀어서? 집값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공공택지다 보니까 분양가상한제로 묶어 놓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게 분양가보다 5배 6배 뛰는 역효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로또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비판을 하려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용적률 상향이나 공원 면적 축소 그다음에 임대 비율을 좀 낮춰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자들한테 너무 과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매입을 다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미분양 매입을? 미분양 매입을 다 해 주게 되면 사업자들한테 또 확정이익을 좀 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분양 원가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안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도 대책 수립 과정에 대비를 했던 거라서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저는 1분을 덜 쓰겠습니다.

2월 달입니까,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게 2월 달이지요? 제 기억이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면 체감을 못 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고는 하는데 뭘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심 쓴다고 환경영향평가 등급 1·2급지를 건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대체지를 구해라, 대체지를.

장관님, 지금 대체지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장관님은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1만 m²를 푸는 대신에 1만 m²를 묶으라는 거잖아요, 새로. 그렇지요? 그것 어디에 구합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실적으로……

○**서범수 위원** 민간 소유지에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유지나 이런 걸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범수 위원** 그런데 국유지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난감한 조건을 전제로 발표가 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그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 안 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고민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나와야 되는데……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 건은 제가 국감 때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단위가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국유지를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협조 요청이든지 이런 게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 사실은 국토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하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가덕도신공항 2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서법수 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울릉공항은 2년 늦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울릉 공항하고 가덕도신공항하고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5배 20배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규모는 가덕도신공항이 훨씬 큽니다.

○서법수 위원 울릉공항 이 작은 것 하나 하는 데도 지금 2년이 늦어진다 그러는데 가덕도신공항 이것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기술적인 판단이고요. 제가 여러 각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계라든지 또 협업에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의견을,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울릉공항하고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울릉공항은 모든 자재를 다 바지선 같은 데 실어 가지고 가져와야 되고 케이슨을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어서요. 제가 지난 7월 10일에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재건축이 위낙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건의드렸고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서 법령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행 수단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중동하고 산본에서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김은혜 위원 예, 기본 방침이 발표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 기본 방침 외에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김은혜 위원 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으로 적절한 비율로 지금 발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더라고요.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특별법 취지를 반영을 해서 도정법 대비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가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미 1기 신도시에, 사실은 산본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기존 인프라를 분석해서 현행 인프라로 버틸 수 있는 용적률을 추가로 더 주는 그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몇 프로, 하수도가 몇 프로 그다음에 도로 용량이 어떻고 해서 상하수도 도로 공원 이런 것이 각 신도시마다 용량이 다 차이가 나서 그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주는 용적률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봐서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도 위낙 바탕이 잘돼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비율이 낮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의 발표로 실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것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말씀은 기반시설의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공공기여 비율을 줄이겠다는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게 1구간 정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다라고 지자체에 넘기시는 건지, 2개 중에 어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시행령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계획을 세워 왔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그 외에 주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발표하고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실적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수치를 이 달 안으로 저희 의원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각각의 공급이 어떤 것은 착공, 어떤 것은 인허가, 입주, 각각 달라요. 기준 뽑는 데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달 안으로 결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8·8 공급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공급계획과 후속 입법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의 경우에는 공사와 대구시 간의 소유권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과 표지석 설치의 적정성 문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 상태, 지상주차장에 설치의 필요 여부, 화재의 발생 시에 진압의 문제 그리고 피해 배상의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었고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쿠팡CLS 관련 종사자 사망 사고 관련해서는 쿠팡CLS가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표준계약서 개정하고 생활물류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구로역 코레일 유지보수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유가족 지원의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가 수반되었으면 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마무리하실 분이 계시면 짧게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님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많은 기관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몇몇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화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잘 논의를 해서 차기 회의부터 합리적으로 참석 여부를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 위원(30인)

권영세	권영진	김기표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서범수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염태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위원 아닌 출석 의원(6인)

김윤덕 김종민 배준영 서미화 이강일 이정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입법심의관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1차관 진현환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물류정책관 김근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경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용복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나경균

【보고사항】

○의안 회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8)

이상 5건 7월 17일 회부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17.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이상 5건 7월 18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4)

이상 4건 7월 19일 회부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4)

이상 7건 7월 22일 회부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6)

이상 6건 7월 23일 회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2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3)

이상 6건 7월 24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6)

이상 7건 7월 25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이춘석 의원·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5)

이상 5건 7월 26일 회부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9)

이상 9건 7월 29일 회부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4)

이상 6건 7월 30일 회부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7월 31일 회부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이상 6건 8월 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6)

이상 8건 8월 2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5)

이상 2건 8월 5일 회부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이상 3건 8월 6일 회부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3)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5)

이상 4건 8월 12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0)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8. 12.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5)

이상 8건 8월 13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7)

이상 6건 8월 14일 회부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0)

이상 4건 8월 16일 회부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이상 7건 8월 19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이상 4건 8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이상 3건 7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별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8.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7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7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73)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3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이상 4건 8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9)

8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8.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8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49호	2024. 7. 2.	대통령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50호	2024. 7. 2.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51호	2024. 7. 2.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52호	2024. 7. 2.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53호	2024. 7. 2.	대통령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54호	2024. 7. 2.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55호	2024. 7. 2.	대통령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56호	2024. 7. 2.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90호	2024. 7. 9.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34691호	2024. 7. 9.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92호	2024. 7. 9.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93호	2024. 7. 9.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94호	2024. 7. 9.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95호	2024. 7. 9.	대통령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696호	2024. 7. 9.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716호	2024. 7. 16.	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720호	2024. 7. 16.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750호	2024. 7. 23.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774호	2024. 7. 30.	대통령령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775호	2024. 7. 30.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776호	2024. 7. 30.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50호	2024. 7. 3.	부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51호	2024. 7. 10.	부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52호	2024. 7. 9.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53호	2024. 7. 10.	부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54호	2024. 7. 10.	부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55호	2024. 7. 10.	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 7. 10.	부령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59호	2024. 7. 10.	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61호	2024. 7. 10.	부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부령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63호	2024. 7. 12.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64호	2024. 7. 17.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65호	2024. 7. 17.	부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66호	2024. 7. 16.	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 7. 18.	부령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일부개정령	제136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68호	2024. 7. 30.	부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71호	2024. 7. 31.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72호	2024. 7. 31.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03호	2024. 7. 11.	입법예고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09호	2024. 7. 9.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56호	2024. 7. 22.	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61호	2024. 7. 22.	입법예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67호	2024. 7. 23.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69호	2024. 7. 23.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5호	2024. 7. 31.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84호	2024. 7. 3.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85호	2024. 7. 5.	입법예고